

www.kipf.re.kr

세법연구 24-05

# 일본 디지털자산의 과세제도 조사 및 시사점

홍병진·박수진·김혜림

2024. 1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 병 진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김 혜 림 세무사

# 목 차

I. 서론 .....	1
II.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4
1. 개요 .....	4
가. 규제 인프라 .....	4
나. 회계처리 .....	5
2. 가상자산 과세제도 .....	9
가. 부가가치세 .....	13
나. 소득세 .....	15
다. 가상자산 국제거래 과세제도 .....	28
3. 토큰증권 과세제도 .....	31
가. 부가가치세 .....	32
나. 소득세 .....	33
4. NFT 과세제도 .....	35
가. 부가가치세 .....	36
나. 소득세 .....	37
III. 일본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38
1. 개요 .....	38
가. 일본 디지털자산 정의 및 유형 .....	38
나. 일본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 .....	44

2. 암호자산 과세제도 .....	50
가. 소비세 .....	50
나. 소득세 .....	51
다. 암호자산 국제거래 과세제도 .....	64
3. 토큰증권 과세제도 .....	66
가. 소비세 .....	66
나. 소득세 .....	67
4. 전자결제수단(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 과세제도 .....	71
가. 소비세 .....	71
나. 소득세 .....	72
5. NFT 과세제도 .....	73
가. 소비세 .....	74
나. 소득세 .....	75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78
1. 국제 비교 .....	78
가. 가상자산 .....	79
나. 토큰증권 .....	85
다. 스테이블코인 .....	87
라. NFT .....	88
2. 시사점 .....	90
가. 규제 인프라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선 방안 .....	90
나. 가상자산 국제거래 .....	97
다. 기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	101
V. 결론 .....	104
참고문헌 .....	106

## 표 목차

〈표 II-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	10
〈표 II-2〉 가상자산 과세제도 주요 연혁 .....	17
〈표 II-3〉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거래유형 구분 .....	19
〈표 II-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요약 .....	21
〈표 II-5〉 가상자산 또는 현금 인출 시 원천징수납부액 계산 .....	30
〈표 III-1〉 일본 「금상법」에 따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취급 .....	42
〈표 III-2〉 일본 디지털자산의 유형 .....	43
〈표 III-3〉 일본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 현황(2019~2024년) .....	46
〈표 III-4〉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발행 상황(2019~2024년 6월) .....	48
〈표 III-5〉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 구분 .....	53
〈표 III-6〉 암호자산 무상·저가 양도 시 과세 취급 .....	58
〈표 III-7〉 암호자산 거래 관련 ‘그 외의 잡소득’ 소득세 신고 현황 .....	60
〈표 III-8〉 암호자산(가상통화) 등 거래 세무조사 현황 .....	61
〈표 III-9〉 증권토큰에 대한 금상법 및 소득세법상 취급 .....	71
〈표 III-10〉 NFT 거래에 대한 소비세 취급 .....	75
〈표 III-11〉 NFT 거래에 대한 소득세 취급 .....	77
〈표 IV-1〉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별 부가가치세 취급 .....	80
〈표 IV-2〉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 .....	81

〈표 IV-3〉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무상 또는 저가양도 과세취급(개인vs개인) ……	83
〈표 IV-4〉 한국과 일본의 조각투자상품 과세 처리 ……	87
〈표 IV-5〉 한국과 일본의 NFT 과세 처리 ……	89

## 그림 차례

[그림 II-1] 트레이드 마이닝 거래구조 .....	15
[그림 III-1] 일본 암호자산(현물)의 국내 거래고 및 비트코인(BTC) 세계 시가 총액의 추이 .....	45
[그림 III-2] 일본 GK-TK 체계 .....	69
[그림 III-3] NFT 거래 흐름 .....	74



# I. 서론

-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비증권형)과 토큰증권(증권형)으로 구분하며, 이원화된 규제 및 과세 인프라를 구축 중임
  - 가상자산 세제는 2020년에 도입하였지만, 해당 세제는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과세 인프라 개선의 측면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과세를 유예함
    - 가상자산 세제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만을 정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지 못함
    -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sup>1)</sup> 현행 법인세는 가상자산 취급 규정이 미비함
  - 조각투자 상품으로 대표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과세할 예정임
  
- 일본은 암호자산(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기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2019년 세계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하였는데, 현재 암호자산 과세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함
  - 규제 측면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가상통화), 스테이블코인, 증권토큰에 대한 법적 정비를 마련함

---

1) 2025년 상반기부터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거래를 시작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며, 다만 일반법인의 전면 계좌 허용은 관련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밝힘(금융위원회·관계기관 합동, 2025. pp. 1~6)

- 2016년 「자금결제법」의 개정<sup>2)</sup>을 통해 암호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규제를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취급하고 국내 발행을 허용함<sup>3)</sup>
- 2019년 「금상법」의 개정<sup>4)</sup>을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 제도를 정비하고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암호자산을 이용한 금융투자나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함

□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일본의 그것을 계수한 내력이 있으므로 일본 디지털자산의 취급을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5)</sup>

□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등 과세제도와 일본의 디지털자산 규제 및 과세처리 규정을 조사함

-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2024년 세법 개정 이전)는 홍병진·박수진·김민경(2024)에서 설명하므로 선행 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제도를 설명함
-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소비세)와 소득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OECD의 암호자산신고프레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과 EU의 조세분야 행정협력 준칙(DAC8)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음
-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설명할 때 가상자산, 암호자산(가상통화), 토큰증권,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의 용어를 해당 국가 제도를 설명할 때 각각 혼용하여 사용함<sup>6)7)</sup>

2)平成 21년 법률 제59호, 2017년 4월 시행

3)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3개 주체로 한정함(谷合正成, 2024, p. 3)

4)令和 2년 1948년 법률 제25호, 2020년 5월 시행

5)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한 주요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가 있으나, 미국 및 영국은 강동익·홍성희·박수진(2022)에서 설명하고, 독일, 프랑스 및 EU 회원국은 홍병진·박수진·김민경(2024)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본 보고서는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함

6) 한국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나, 일본은 불특정인 간 통용되는 지급결제 수단 등으로 정의하면서 암호자산(가상통화)으로 칭함.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과 제V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함
  - 제II장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토큰증권, NFT(Non-Fungible Token)의 과세제도를 정리함
  - 제III장은 일본의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유형,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암호자산(가상통화), 토큰증권,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 NFT의 과세제도를 설명함
  - 제IV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국제 비교하고 우리나라 과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을 디지털화한 것을 한국은 토큰증권이라 하고, 일본은 금융규제를 받는 전자기기 등 전자적 방법에 기록되는 토큰을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으로 칭함

- 7) 일본은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해 암호자산(가상통화)으로 표기하는데, 이하 본문에서는 암호자산으로 칭함

## II.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1. 개요

#### 가. 규제 인프라

-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따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함
  -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을 규정함<sup>8)</sup>
  - 2단계 입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상장·공시제도 체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sup>9)</sup>
  
-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은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된 바는 없음
  -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증개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sup>10)</sup>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c), p. 1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a), pp. 1~3

10) 의안번호 2204921-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 2024. 10. 25.; 의안번호 220568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9.; 의안번호 22049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을 밝힘<sup>11)</sup>
  -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활용,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 나. 회계처리

- 2023년 10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공시가 강화됨<sup>12)</sup>
  - 가상자산을 보유, 위탁, 발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공표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의무화함<sup>13)</sup>
  -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중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임
    - 가상자산 범위를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토큰 증권으로 구분하였지만,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및 NFT는 제외함
  - 가상자산 거래 주체를 가상자산 발행기업, 보유기업,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로 구분하여 감독지침을 정함

---

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 2024. 10. 25.; 의안번호 220568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4. 11. 19.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b), pp. 2~3, 7~9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138.6

13)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pp. 2~3, p. 8.;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정리함(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3, p. 2). 감독지침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음.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존재함

-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할 때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개발한 가상자산<sup>14)</sup>의 자산화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sup>15)</sup>
  -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sup>16)</sup>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함
  - 발행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sup>17)</sup>
    -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관련 수행의무 제공과 결합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유보 토큰 단독으로는 가치가 성립할 수 없음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과 금융상품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함<sup>18)</sup>
  - 보유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판매 목적 외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으로 정할 수 있음<sup>19)</sup>
  -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취득 방식과 경로에 따라 달리 결정됨<sup>20)</sup>
    - 유상 취득하는 경우 구입가격(매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취득금액을 산정함

14) 국내 기업들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함(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3, p. 7)

15)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pp. 3~9

16)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완성하여 사용·판매할 의도, ③ 사용·판매할 능력, ④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⑤ 사용·판매 시까지 기술적·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⑥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 13

18)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p. 10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 15.; 한국회계기준원, 「2018-G-KQA006」, 2018. 3.; 한국회계기준원, 「2019-I-KQA017」, 2019. 12.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p. 16~17

-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sup>21)</sup>를 취득금액으로 인식함
  - 용역제공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 에어드랍의 경우 수령 당시 (i) 플랫폼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ii)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시 0으로 인식함
  - 후속 측정은 토큰의 분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함<sup>22)</sup>
    -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함
    -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K-IFRS 적용)의 선택이 가능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sup>23)</sup>
    - 기타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외에는 원가로 측정함
  - 토큰증권 등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금융부채 기준서를 적용하여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함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자기 소유로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함<sup>24)</sup>
-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 통제권<sup>25)</sup>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함<sup>26)</sup>

21) 예시: 서버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등

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p. 17~18

23) 재평가모형은 K-IFRS 적용 기업만 가능하며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손실로 처리함

2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p. 21~24

25)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의미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21)

- 자기 소유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증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K-IFRS 적용)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보유기업과 동일하게 후속 회계처리함
  - 매도 또는 증개 목적으로 일반상품인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순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함<sup>27)</sup>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후속 측정함
-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활성시장 가격이나 활성시장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을 적용함<sup>28)29)</sup>
-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가상자산 공정가치를 측정함<sup>30)</sup>
  - 무형자산 순공정가치 또는 기타자산 공정가치 측정은 활성시장 가격 이외에 관측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비슷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의 비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폭넓게 인정함

26) 고객이 매매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통제권 유무를 판단함

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기타자산으로 분류 가능함

28)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pp. 11~12

29)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을 의미하며, 거래소 상장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양적·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성시장을 판단함

30)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 현재 ① 접근가능한 ②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③ 시장참여자 사이의 ④ 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함

## 2. 가상자산 과세제도

- 우리나라 가상자산 세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차용하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sup>31)</sup>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sup>32)</sup>
  - 가상자산 범위에서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 게임물 이용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적 형태의 예금, 수집 목적의 대체불가한 전자적 증표 등'은 제외함<sup>33)</sup>
    -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상세한 항목은 <표 II-1>을 참조할 것
- 금융위원회는 수집이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함<sup>34)</sup>
  - 디지털자산이 NFT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하도록 함<sup>35)</sup>

---

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차용하도록 개정함

3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3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3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a), p. 3

3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a), pp. 3~4

〈표 II-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근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p>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자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p>	<p>-</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은 접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배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li> <li>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li> <li>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li> <li>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li> <li>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li> <li>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li> </ul> </li> </ol>

〈표 II-1〉의 계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근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li> <li>-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li> <li>- 특정 금융기관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특정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의미함)</li> <li>-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며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제외함)</li> </ul>

〈표 II-1〉의 계속

<p>「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p>	<p>근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p> <p>-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것</p>
---	---

주: 1)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i)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ii) 분할이 가능하며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iii) 특정 제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iv)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제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한 바 있음

자료: 본문의 내용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a)를 요약함

## 가. 부가가치세

-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법」 개정 없이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부가가치세 취급을 처리함
- 과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2021년부터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
  - 2014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이 화폐로 통용 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해석함<sup>36)</sup>
    - 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하여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함<sup>37)</sup>
  - 2021년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sup>38)</sup>
    - 가상자산의 판매·채굴 사업을 통한 가상자산 공급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취급하며<sup>39)</sup> 가상자산 판매·채굴 사업용 전산장비 등 고정자산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취급함
  -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sup>40)</sup>로 보지 않음

36) 서면법규과-920, 2014. 8. 25.; 서면-2014-부가-21616, 2015. 12. 29.; 서면-2016-부가-5583, 2016. 12. 12.

37)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그 외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가상자산을 국가 통제 없이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이 있음

3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31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39) 기준-2018-법령해석부가-116, 2021. 3. 8.; 조심-2019-서-2749, 2019. 12. 31;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2019구합72977

4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함.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권리에 관하여 광업권,

-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채굴기 장비와 관리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는 사건에서 법원은 가상자산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sup>41)</sup>
- 가상자산은 사용가치 없이 지급수단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는 권리의 사전적 의미에도 반함<sup>42)</sup>
- 법원은 가상자산이 소비재가 아니고 공급·유통상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우며, 과세당국도 이를 지불수단으로 상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sup>43)</sup>

□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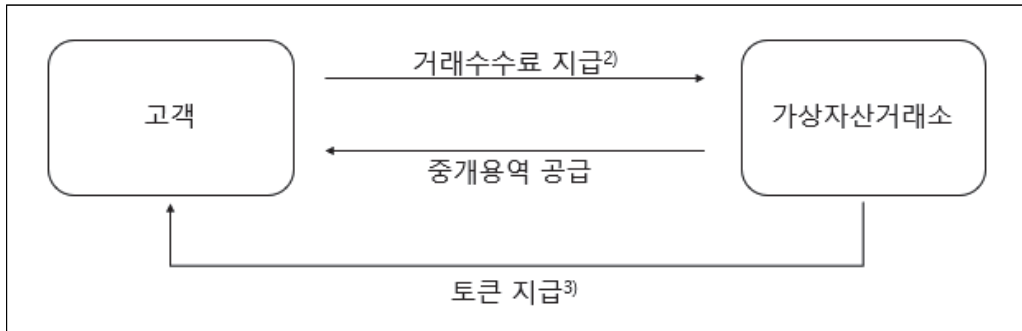
- 가상자산거래소의 중개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에서 거래 수수료와 고객에게 지급한 토큰 간의 대가관계에서 거래수수료를 중개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시함<sup>44)</sup>
  - 가상자산거래소는 회원 간 가상자산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중개 및 출금 등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함
  - 2019년 가상자산거래소는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0.1% 수수료를 수취하고, 고객의 거래 기여도에 따라 자체 발행한 토큰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함([그림 II-1] 참고)<sup>45)</sup>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임(「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41) 수원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14298;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71183;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므로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에도 해당하지 않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 42)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부과대상이 되는 권리에 포함할 수 없음(이석준, 2023, pp. 261~262)
- 43) 「부가가치세법」은 별지 제48호의4 소액외환송금자료에서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취급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48호의4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
- 44)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67601;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2021구합79148

- 법원 판결은 거래수수료가 이용약관상 유료서비스로 명시된 점과 거래수수료 산정과 다르게 토큰 취득량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거래수수료를 토큰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sup>46)</sup>

[그림 II-1] 트레이드 마이닝 거래구조<sup>1)</sup>



주: 1)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을 거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함

2) 수수료 = 거래 체결된 금액(거래 체결된 수량) × 거래수수료율

3) 일일 토큰 지급량 = 거래 기여도(%) × 일일 총 지급수량

거래 기여도(%) = (거래별 당일 거래대금 / 거래소 당일 총 거래대금) × 100

자료: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01(202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148(202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소득세

### 1) 개인소득세

□ 한국은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sup>47)</sup>으로

45) 코인과 토큰은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나, 토큰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진 코인을 기반으로 생성됨. 예로 들어, 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PR), 바이낸스 코인(BNB), 도지코인(DOGE) 등이 있고, 토큰은 이더리움의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니스왑(UNI), 시바이누(SHIB), 샌드(SAND) 토큰 등을 개발하여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33)

46)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큰을 취득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엔 어려우며, 고객의 일일 거래 기여도를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토큰을 지급하는 구조인 점에서 거래수수료와 토큰 지급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무상 분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신설·도입하였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과세 유예함

□ (「소득세법」 개정 연혁)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소득세 개정 사항을 연혁 별로 살펴봄

- 2020년 개정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27호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마련함<sup>48)</sup>
  - 그리고 동법 제37조와 제64의 3조를 개정하여 필요경비, 과세 최저한, 세율, 과세방법 등 구체적인 과세 취급을 정함
- 2020년 개정 당시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예정했으나, 세 차례 과세 유예를 통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함
  - 2021년 12월 8일 개정으로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1차 유예함<sup>49)</sup>
  -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차 유예함<sup>50)</sup>
  -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3차 유예함<sup>51)</sup>
- 2024년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을 신설하여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추계공제를 허용함
-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88조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을 규정함
  - 2021년 2월 17일 가상자산 취득원가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규정하고, 의제 취득가액 시가 산정 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와 기타 사업자로 구분함<sup>52)53)</sup>
  - 2022년 3월 8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주소별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

4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부칙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 제2호)

4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5~7항, 제64조의3 제2항, 제84조 제3호

49) [2021. 12. 8., 법률 제18578호, 일부개정]

50)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일부개정]

51)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일부개정]

52)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53)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주식회사 스트리미가 해당함(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2024.)

-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가상자산 간 교환가액 산정방법을 신설함<sup>54)</sup>
-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추계공제 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사유와 비율을 구체화함<sup>55)</sup>

〈표 II-2〉 가상자산 과세제도 주요 연혁

구분	개정일	개정 사항	근거 법령
「소득세법」 <sup>1)</sup>	2020. 12. 29.	가상자산 세제 도입,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법률 제17757호
	2021. 12. 8.	2023년 1월 1일 시행일 1차 유예	법률 제18578호
	2022. 12. 31.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차 유예	법률 제19196호
	2024. 12. 31.	2027년 1월 1일 시행일 3차 유예 필요경비 추계공제 규정을 신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시행령」 <sup>2)</sup>	2021. 2. 17.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의제취득가액 시가 산정 방법을 신설	대통령령 제31442호
	2022. 3. 8.	가상자산주소별 과세단위 도입, 이동평균법 및 선입선출법 평가방법, 가상자산 간 교환가액 산정방법을 신설	대통령령 제32516호
	2025. 2. 28.	거주자별 과세단위 및 평가방법(총평균법)의 단일화 개정, 필요경비 추계공제 사유 및 적용비율을 신설	대통령령 제35349호

주: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64조의3 제2항, 제84조 제3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요약함

□ 현행 소득세는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sup>56)</sup>

54) [2022. 3. 8., 대통령령 제32516호, 일부개정]

55)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5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가상자산의 양도는 법정화폐와의 매매거래,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를 포함하지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가상자산거래명세서에는 예치서비스 등의 대가를 대여의 예시로 제시함 (〈표 II-3〉 참조)<sup>57)</sup>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
  -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거래유형을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기재토록 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정보가 소득금액 산출 시 활용될 예정임<sup>58)</sup>
  - 세무실무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에어드랍으로 무상 지급한 가상자산을 경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함<sup>59)</sup>
  -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무상 지급한 사건에서 거래수수료 100% 해당분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함<sup>60)</sup>
  -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자가 무상으로 받는 가상자산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대가성과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함<sup>61)</sup>

5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 서식(가상자산거래명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64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58)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가상자산거래명세서에 거래내역(거래자 및 거래상대방 인적정보, 가상자산 종류, 거래일자, 거래유형, 단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9) 조심 2020서7378, 2022. 1. 18. 현재 조세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0) 본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 기간에 혜택 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조심 2024서 5283 2024. 12. 3.)

6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기준-2021-법무재산-0167, 2022. 8. 2.

〈표 II-3〉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거래유형 구분

코드	유형	거래유형	⑮양도 등	⑯취득 등	⑰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 (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 (원화→가상자산A)	-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
03	교환 양도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 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04	교환 취득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 가상자산B)		가상자산B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와 발생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 주소(지갑주소)로 이전	-	이전 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	인입된 가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 (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자료: 별지 제30호의3서식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가상자산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수입금액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으로 인한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대가임<sup>62)</sup>
  - 가상자산 교환 시 기축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함<sup>63)</sup>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sup>64)</sup>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함<sup>65)</sup>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가상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양도 시 발생한 수수료 등을 포함함<sup>66)</sup>
  - 거주자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함<sup>67)</sup>
  -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sup>68)</sup>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적용함<sup>69)</sup>
    - 그 외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을 적용함

62)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검색일자: 2025. 2. 16.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로 위임되어 있으며, 관련 사항은 발표할 예정임

64)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주식회사 스트리미가 해당함(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2024.)

65)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으로서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마켓의 테더가 있음(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검색일자: 2024. 11. 29.)

66)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부대비용에는 거래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 등이 해당함

67)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2조 제2항 제4호(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2025. 2. 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68)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2025. 2. 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69)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주식회사 스트리미가 해당함(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2024.)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추계공제를 허용함<sup>70)</sup>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수수료 등은 인정하지 않음<sup>71)</sup>
- 과세표준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함<sup>72)</sup>
  -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소득 내에서만 통산 가능하며, 차기로 이월 공제할 수 없음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표 II-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요약

구분	내용	근거 법령
과세소득	가상자산의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sup>1)</sup>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소득분류	기타소득 <sup>2)</sup>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부대비용) - 기본공제 · 취득가액: 총평균법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 한도 ·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제64의3조 제2항
세율	20%	「소득세법」 제64의3조 제2항
과세방법	분리과세 <sup>3)</sup>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제84조 제3항

주: 1)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2) 현행 세법에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득 및 보유단계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굴 및 스테이킹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요약함

70)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제5항; [2025. 2. 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72) 「소득세법」 제84조 제3항; 「소득세법」 제64조의 3 제2항

- 특수관계자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배당소득,<sup>73)</sup>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sup>74)</sup>
    - 부당성은 고가양수·저가양도, 저리대여·고리차용 등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sup>75)</sup>
  - 「소득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함<sup>76)</sup>
  - 가상자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출자지분처럼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함<sup>77)</sup>

## 2) 법인세

- 한국은 현재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제한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함
  - 2018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현금화 등을 차단함<sup>78)</sup>
  - 다만 법인은 해외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하여 코인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음<sup>79)</sup>

7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함

74) 「소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에 있는 자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7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76) 「법인세법」 제52조

7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7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 법집행기관,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우선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sup>80)</sup>
- 현금화 목적의 매도거래를 시작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일반법인의 전면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 검토 사항임

### 가) 가상자산 과세제도

-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함
  -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정의를 차용함<sup>81)</sup>
  - 내국법인은 가상자산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9~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규정함<sup>82)</sup>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 가상자산 거래로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sup>83)</sup>
  -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가매입·저가양도, 저리대여·고리차용, 불공정자본거래, 기타 거래가 있음<sup>84)</sup>

79) 업비트, <https://support.upbit.com/hc/ko/articles/8870229688217-%EB%B2%95%EC%9D%B8%ED%9A%8C%EC%9B%90-%EA%B0%80%EC%9E%85-%EB%B0%A9%EB%B2%95-%EC%95%88%EB%82%B4>, 검색일자: 2025. 2. 17.; 「대한경제」, 「법인, 코인 거래 확산하나」,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4101324516400653](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4101324516400653), 검색일자: 2025. 2. 17.

80)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2025). p. 6

8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항을 차용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항)

82)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83) 「법인세법」 제52조의 제1항

8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고가매입·저가양도, 저리대여·고리차용, 일부 기타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 시가 산정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름<sup>85)</sup>
  - 현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시가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함
  - (i)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ii) 그 밖의 가상자산은 위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함<sup>86)</sup>

#### 나) 가상자산 발행기업 현황 및 과세규정<sup>87)</sup>

- 2017년 9월 가상통화 정부 관계기관 합동TF가 국내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 ICO를 진행함<sup>88)</sup>
- 해외 발행회사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 재단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 후 ICO 자금을 모집하고, 국내 기업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국내에 송금함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상장주식 장외거래, 대량매매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함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60조 제2항

87)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스타트업 등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토큰을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방식을 지칭하고, ICO로 모집한 가상자산은 법인에 보관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내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비용으로 활용되고 이후 국내법인이 가상자산 개발을 완료하면 투자자에게 기존 토큰과 교환하여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함

8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p. 2, 7

- 국내 개발회사는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 홍보 등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ICO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함
- 국내 주요 5개 상장사의 가상자산 발행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외 자회사를 통해 총 10종의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7종이 국내의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됨<sup>89)</sup>
  - 8종의 가상자산이 유상매각되어 7,890억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3건에서 1,126억원의 수익을 인식함<sup>90)</sup>
  - 발행회사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는 부채로 계상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 해외 자회사의 ICO를 사실상 국내 모회사가 진행한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함<sup>91)92)</sup>
  -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이는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 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함<sup>93)94)</sup>

89) 조사 대상 회사는 (주)카카오, (주)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주)다날의 5개 상장사로 구성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b, p. 8)

90) 2022년 말 누적액 기준으로 용역제공대가 등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우 포함함

91) 해외 자회사가 ICO 자금모집 외에 내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프로젝트 개발, 백서 작성, 투자자 홍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함

92)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토큰 발행(판매)시점에 수익 인식을 하여야 하고,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2022년 1월 1일 이전)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 3. 6.)

93) 대법원은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 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두8896, 2016. 1. 14.; 대법원 2017두237, 2022. 6. 14.)

94)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적용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설립목적이나 조세회피 의도는 추가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대법원 2021두52471 2022. 1. 27. 심리불속행;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68, 2021. 8. 25.)

- 「법인세법」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관리장소에 귀속되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과세함<sup>95)</sup>
-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진행한 ICO를 국내 사업장으로 의제하여 과세처분함<sup>96)</sup>
  - 해외 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의사결정 기관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함<sup>97)</sup>

#### 다) 가상자산거래소 회계처리 및 과세규정

- 가상자산거래소는 회원 간 가상자산 매매거래 중개와 자산관리 및 운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수취함<sup>98)99)</sup>
  -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스피)를 포함한 출금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가스피는 필요경비로 산입함<sup>100)</sup>
- 수수료로 취득한 주요 5개 거래소의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sup>101)</sup>
  - 대부분 주요 거래소(4개)는 가상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함<sup>102)103)</sup>

95)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96) 적부2021-112, 2022. 8. 31.

97) 이 외 국내 개발회사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었으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되었음

98)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고 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지칭하고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4, p. 1)

99) 매도·매수 거래, 시세 정보검색, Open API, 전자지갑 서비스 등 서비스별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100) 거래소 이용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계정과 전자지갑을 사용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통해 거래소 외부로의 입출금이 가능함

101)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5개 거래소의 2024년 3분기 보고서 및 2023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함(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검색일자: 2025. 1. 24.)

102) 가상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래소들은 이를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당좌자산 항목

- 그러나 한 거래소(1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함
- 5개 거래소 모두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단위원가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함<sup>104)</sup>
-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통제권이 없다고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가상자산 후속 측정방법은 활성시장<sup>105)</sup>이 있는 경우 해당 활성시장의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함
  - 활성시장 가격으로 자사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코인마켓캡 증가로 평가함<sup>106)</sup>
-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평가에 대해 달리 정한 바 없다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평가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함<sup>107)</sup>
  - 「법인세법」 개정 전에 가상자산을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한 가상자산거래소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거래소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음<sup>108)</sup>
  - 법원은 거래소의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법인세법」이 평가대상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달리 규정한 바 없고, 제품 및 상

---

으로 계상함

- 103)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자산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15)
- 104)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 사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체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함
- 105)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국내외 시장을 의미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25)
- 106) 코인마켓캡 사이트는 전 세계 거래소별 거래량과 시세를 집계하여 고시함
- 10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 108) 서울고등법원 2024누37529 2024. 8. 20.;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46 2024. 2. 8.

품, 반제품 또는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 시 사용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없음<sup>109)</sup>

-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됨<sup>110)</sup>

## 다. 가상자산 국제거래 과세제도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고,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sup>111)</sup><sup>112)</sup>
  - 과세대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비거주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시가와 필요경비 등 거주자의 계산 방식을 준용함
- 2022년 세법 개정 시 가상자산의 인출·입고 내용을 추가하고<sup>113)</sup> 2025년 개정 시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을 마련함<sup>114)</sup>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인출 및 입고 시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음

10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110) 거래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을 질의하여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지 않는 회사가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2018년 3월에 회신받음(한국회계기준원, 「2018-G-KQA006」, 2018. 3.)

11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11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신원확인이 어려운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이 제한됨

113)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2022. 3. 8., 대통령령 제32516호, 일부개정)

1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비거주자가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출시점의 시가임<sup>115)</sup>
  -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을 비거주자가 직접 입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의 시가임<sup>116)</sup>
  -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인출 또는 입고 시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가상자산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준용함<sup>117)</sup>
  -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함<sup>118)</sup>
- 비거주자에게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됨
-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sup>119)</sup>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sup>120)</sup>
  - 원천징수금액은 양도가액(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함<sup>121)</sup>
  -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원천징수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원천징수함<sup>122)</sup>
    - ‘원천징수액 상당의 가상자산’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sup>123)</sup>을 가상자산 교환·인출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

115)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5항)

116)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

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함

1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호(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119)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8항

12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1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5항; 이경근(2024), p. 925

123)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업자 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함<sup>124)</sup>

-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개인별 납부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가상자산과 현금을 인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sup>125)</sup>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 누적액(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고,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함<sup>126)</sup>

〈표 II-5〉 가상자산 또는 현금 인출 시 원천징수납부액 계산

구분	산식
인별 납부액 <sup>1)</sup>	$(A - D) \times \frac{B}{C}$
손실 발생 시 원천징수누적액(A)	손실 발생 직전 거래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금액의 20%와 Z 중 적은 금액) <sup>2)3)</sup>

주: 1) A: 인별 원천징수누적액  
 B: 인별 가상자산 또는 현금 인출액  
 C: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 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2)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 수량  
 3) Z: 손실 발생 직전 거래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 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8항과 제9항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sup>127)</sup>
- 소득지급자는 비거주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함<sup>128)</sup>

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4호  
 125)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과 현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소득세법」 제156조 제1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8항)  
 1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9항, 제10항  
 127)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128)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의3호 별지 제29호의2서식(1)

### 3. 토큰증권 과세제도

- 한국에서 논의하는 토큰증권 유형은 주로 조각투자상품<sup>129)</sup>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이므로 본문은 이를 중심으로 서술함<sup>130)</sup>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임<sup>131)</sup>
    - 기존의 증권을 실물증권 또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나 토큰증권으로 발행 시 분산원장에 기재함
    - 현재 토큰증권은 미러링 방식을 사용하므로 그 토큰 자체가 제삼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sup>132)</sup>
  -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및 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임<sup>133)</sup>
    -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하며 실물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함<sup>134)</sup>
  - 현재 조각투자상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가 발행 및 유통할 수 있음<sup>135)</sup>

129)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로 실물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p. 1);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및 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임(기획재정부, 2024b, p. 31)

130) 토큰증권 관련 내용 및 사례는 홍병진·박수진·김민경(2024, pp. 10~23)을 참조할 것

1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a), p. 2

132) 조웅규·최영노·남궁주현(2021), pp. 171~178

133) 기획재정부(2024b), p. 31

13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p. 2

135)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p. 6)

- 2024년 세법 개정<sup>136)</sup> 시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각투자상품의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2025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임<sup>137)</sup>
- 당초 조각투자상품(증권)에 대한 과세는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함

## 가.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상품(증권) 관련 과세 처리를 명확히 규정한 바 없음
  - 그러나 재화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고려하면 조각투자상품(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것으로 보임<sup>138)</sup>
- 그러나 혁신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 혁신금융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는 금융·보험 등 업종에 속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지만, 금융·보험 용역의 정의를 달리 정의하지 않고 면세 대상 금융·보험 등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sup>139)</sup>

136)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일부개정(시행 2025. 7. 1.)]

137)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5의3호, 5의4호, 9호

13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거나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써 소비재의 사용·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권리)에 포함하지 않음(서면3탐-2640, 2007. 9. 19.; 서삼46015-1151 7, 2002. 9. 5.; 국심 2006서1705, 2006. 9. 13.)

139)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열거하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부수용역으로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혁신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조세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정 대행 용역 및 수수료거래 등에 해당하여 면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sup>140)</sup>

## 나. 소득세

- 조각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실무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 취급이 일관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유동화증권(DABS)의 매매차익, 신탁 부동산의 임대·양도소득과<sup>141)</sup>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해석함<sup>142)</sup>
  - 한편 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부동산 및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sup>143)</sup>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는 미술품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등 세무실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음<sup>144)</sup>

140)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 금전으로 실물자산 등 투자(「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단서, 대행용역 및 수수료 거래(「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 및 지급대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은행 보호예수, 일반사무관리회사업 등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141)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공유지분을 디지털화한 부동산 유동화증권(DABS)의 매매차익과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 5.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2020. 6. 18.; 원천세과-423, 2022. 6. 28.)

142)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증권의 보유·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봄(서면-2023-법규소득-2674, 2024. 1. 9.)

143) 카사, <https://www.kasa.co.kr/faq>, 검색일자: 2025. 3. 19.; 뮤직카우, [https://www.musicow.com/help/notices/493?type=1&sub\\_tab=&keyword=%EB%B0%B0%EB%8B%B9%EC%86%8C%EB%93%9D](https://www.musicow.com/help/notices/493?type=1&sub_tab=&keyword=%EB%B0%B0%EB%8B%B9%EC%86%8C%EB%93%9D), 검색일자: 2025. 3. 19.

144) 아트앤가이드(얼매컴퍼니), <https://artnguide.co.kr/customer-service/question-faq>, 검색일자: 2025. 3. 19.

-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sup>145)146)</sup>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sup>147)</sup>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
  - 투자계약증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sup>148)</sup>
    -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는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함
    - 증권의 양도(실물 양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공제함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세의무를 제외함<sup>149)</sup>
- 한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과세할 것으로 보임<sup>150)</sup>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조각투자 사업에 끼워넣은 비금전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법인과세신탁)으로 취급하여 과세 처리함

145)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조각투자상품은 펀드와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함(기획재정부, 2024a, p. 20)

14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제11항

147) 신탁업자는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148)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149)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50)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기존 과세 처리는 홍병진·박수진·김민경(2024, pp. 28~41)를 참조할 것

- 비금전신탁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과세할 수 있음<sup>151)</sup>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투자계약증권을 과세 목적상 익명조합 출자지분으로 간주한다면 분배와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존 유권해석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을 것임<sup>152)153)</sup>

#### 4. NFT 과세제도

- 한국 세법은 NFT의 개념이나 과세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세법의 일반원칙으로 과세 처리함
- 금융위원회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함)’로 정의하면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sup>154)</sup>

151) 법인과세신탁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발행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법인과세신탁 규정의 시행 이전 체결한 비금전 신탁계약은 신탁소득이 발생한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할 때 수익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

152) 채소득 46073-173, 2002. 12. 13.; 서면-2016-법인-2758, 2016. 6. 2.; 서면-2015-소득-0596, 2015. 5. 7.; 소득세과-1065, 2011. 12. 20. 등 다수

153) 만일 조각투자 사업을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또는 익명조합 형태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조각투자 사업의 투자자 모두 유한책임을 지고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 인적 결속을 예상하기 곤란하고 실제 사업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홍병진·박수진·김민경, 2024, p. 38). 공동사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은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음

15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b), p. 2

-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이 「자본시장법」 증권<sup>155)</sup>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sup>156)</sup>에 해당하면, 그 해당 법령을 적용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sup>157)</sup>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sup>158)</sup>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sup>159)</sup>

### 가. 부가가치세

- 기획재정부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NFT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그 외 NFT에 대해서는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권해석함<sup>160)</sup>
- 해당 사례에서는 프로축구 영상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후 각 선수들의 정보 및 경기 영상에 일련번호와 등급을 부여하여 NFT를 제작·판매함

155)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a, p. 3)

156)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a, p. 4)는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

157) 예시: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158) 예시: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159) 예시: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16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 6. 24.

## 나. 소득세

- 과세당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NFT 거래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음<sup>161)</sup>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 NFT 발행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거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취급함
  - 거래수수료를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한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또는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16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23. 1. 20.; 서면-2022-법규소득-2671, 2023. 1. 25.

### Ⅲ. 일본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1. 개요

##### 가. 일본 디지털자산 정의 및 유형

- 일본 디지털자산은 일반적으로 지급결제 수단의 암호자산과 증권형 암호자산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162)</sup>
  - 일본법은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에 따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취급함
  - 증권형 암호자산 혹은 증권토큰(security token)은 개정 「금상법」의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의 개념을 통해 그 발행 및 취급을 규제함<sup>163)</sup>
- 일본 세법은 암호자산과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정의와 해석을 빌리므로 본문에서 해당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봄
- (암호자산)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는 암호자산(가상통화)을 제1목와 제2목의 암호자산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

162) 암호자산의 유형을 통화/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금융/투자 토큰으로 구분할 때(홍병진·박수진·김민경, 2024, p. 5, 각주 13), 일본 암호자산은 주로 통화/결제 토큰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久保田安彦, 2022, p. 55).

163) 일본법은 증권토큰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별도로 두지 않고, 금상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토큰의 발행 및 취급 규정을 명확히 함

권리 등은 제외함<sup>164)</sup>

- 제1호: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일본통화 및 외국통화, 통화표시자산 및 전자결제수단(통화표시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하다]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제1호 암호자산이라 칭함)
- 제2호: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전호에 열거한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제2호 암호자산이라 칭함)<sup>165)</sup>
-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이나 NFT는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취급하여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sup>166)167)168)</sup>

164) 「자금결제법」 제2조 14호 단서규정

165) 제2호 암호자산은 제1호 암호자산과 달리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금결제법」상 암호자산이 모두 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坂和夫/松本美/福田正樹, 2022, 24頁.; 길용원, 2023, pp. 63~64. 각주 36)

166)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수급 조정을 통해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수급조정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암호자산(가상통화)으로 취급하고, 암호자산, 금, 유가증권 등의 상품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융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그 구조에 따라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음(山沖義和, 2022. 12頁; 이효경, 2024, pp. 93~94)

167)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의하는 전자결제수단은 다음과 같음  
제1호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차입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통화표시자산에 한하며, 유가증권, 「전자기록채권법」(2007년 법률 제10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기록채권,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선불식 지급수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유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을 제외함. 다음 호에서 같다]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제2호 불특정인 사이에서 제1호 전자결제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통화표시자산)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다음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함)

제3호 특정금전신탁수익권[여기서 특정금전신탁수익권은 전자적으로 기록 및 이전할 수 있는 금전신탁의 수익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금전 전액을 예약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Non Fungible Token(NFT)<sup>169)</sup>는 「자금결제법」 규제 대상인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sup>170)</sup>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2019년 개정 「금상법」<sup>171)</sup>은 규제 대상 유가증권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토큰에 표시한 권리'를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으로 규정하고 발행 및 취급을 규제함

- 「금상법」 제2조는 유동성을 감안하여 규제 대상 유가증권을 제1항 유가증권과 제2항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달리하는데 제1항 유가증권은 공시의무, 신고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제2항 유가증권은 제1항 유가증권보다 규제를 완화함<sup>172)</sup>

- 2019년 개정 전 「금상법」 제2조 제1항은 증권·증서의 발행을 예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신주예약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열거하고,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유가증권(일부 제외)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유가증권표시권리)가 증권·증서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전자화)에도 그 권

말함(제2조 제9항)

제4호 전항에 열거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것

168)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및 상환은 기본적으로 환거래로 보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한정함(細川健, 2024, p. 13; 이효경, 2024, p. 101)

169) NFT는 ① 발행자 등에서 불특정인에 대하여 물품 등의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의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② 해당 재산적 가치의 가격이나 수량, 기술적 특성·사양 등을 종합 고려해, 불특정인에 대해서 물품 등의 대가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한정적인 것 등 암호자산 해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金融庁「事務ガイドライン第三分冊：金融会社関係」16. 暗号資産交換業者関係(新旧対照表), (2023年 3月 24日 公表)

170) 金融庁「事務ガイドライン(第三分冊：金融会社関係)(16 暗号資産交換業者関係)の一部改正(案)の公表」(金融庁, 「事務ガイドライン(第三分冊：金融会社関係)の一部改正(案)の公表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について」, 令和 5年 3月 24日, <https://www.fsa.go.jp/news/r4/sonota/20230324-2/20230324-2.html#bessi>, 검색일자: 2025. 2. 6.); 細川健, 2024, pp. 13~15)

171) 2019년 5월 31일에 성립한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수반하는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개정법(2020년 5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함(PWC,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実体法上の位置付けおよび関連する法規制」, <https://www.pwc.com/jp/ja/knowledge/prmagazine/pwcs-view/202303/43-06.html>, 검색일자: 2025. 2. 3.)

172) 이효경(2022), pp. 234~236

리는 제1항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함

- 그리고 제2항은 증권·증서로 표시되지 않은 권리인 (외국)신탁수익권, (외국)합동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권 등, 익명조합 또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등의 집합투자체계지분, 외국의 조합형 펀드 지분 등을 각호에서 열거하는데,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어 유가증권으로 간주함(간주 유가증권)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은 전자적정보처리기관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등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는 것에 한정함)에 표시하는 유가증권표시권리 또는 권리를 말하며,<sup>173)</sup> ‘토큰화 유가증권표시권리(토큰화 유가증권)’과 ‘전자기록이전권리’로 구분함
  - 토큰화 유가증권은 「금상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표시권리)를 토큰에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제1항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함<sup>174)</sup>
  - 전자기록이전권리는 「금상법」 제2조 제2항의 유가증권(간주 유가증권)에 표시한 권리를 토큰에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sup>175)</sup> 제1항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규제함<sup>176)</sup>
  - 다만 전자기록이전권리 중에서 취득자의 제한과 토큰의 양도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 경우 전자이전권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이를 ‘적용 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라고 함) 제2항 유가증권으로 취급하고 제1항 유가증권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sup>177)</sup>

173) 「금상법」 제29조의2 제1항 제8호;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조 제4항 제17호, 제6조의 3

174) 「금상법」 제2조 제3항

175) 「금상법」 제2조 제3항;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조 제3항 제2조의 2

176) 이병관(2024), p. 21; 당초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제2항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여 공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토큰화된 간주유가증권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유동성이 높은 제1호 유가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 규제를 부과함(矢野貴之, 2024, p. 35)

177) 적격기관투자자 또는 특례업무대상 투자자와 유사한 범위의 투자자 외의 자에게는 토큰을 취득 시켜 이전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취득자 제한)를 하고 양도할 때마다 권리 보유자의 신청 및 발행자의 승낙이 없으면 토큰을 이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조치(양도 제한)를 갖추어야 함(이효경, 2022, pp. 237~238)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은 그 유형에 따라 「금상법」상 규제에 차이를 둠<sup>178)</sup>
  - 취급기관을 살펴보면 토큰화 유가증권과 전자기록이전권리의 매매 기타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이 필요하고 적용 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의 경우 제2종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이 필요함<sup>179)</sup>
  - 자율규제기관을 살펴보면 토큰화 유가증권과 관련된 업무는 일본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전자기록이전권리와 적용 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는 금상법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협회로 인정받은 일본STO협회임

〈표 III-1〉 일본 「금상법」에 따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취급

권리 유형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유형	공시규제 취급	업종규제 등록별 취급	자율규제기관
제1항 유가증권표시권리 <sup>1)</sup>	토큰화 유가증권	제1항 유가증권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일본증권업협회
제2항 유가증권 <sup>2)</sup> (간주유가증권)	전자기록이전권리	제1항 유가증권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일본STO협회
	적용 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 <sup>3)</sup>	제2항 유가증권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일본STO협회

- 주: 1) 제1항 유가증권표시권리에는 주식, 채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이 있음  
 2) 제2항 유가증권에는 (외국)신탁수익원, (외국)합동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권 등, 익명조합 또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등의 집합투자체계지분, 외국의 조합형 펀드 지분 등이 있음  
 3) 전자기록이전권리 중에서 적격기관투자자 등 취득자의 제한 및 양도할 때마다 권리 보유자의 신청 및 발행자의 승낙이 없으면 토큰을 이전할 수 없게 하는 양도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완화된 「금상법」상 규제를 적용함

자료: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2), p. 3; 矢野貴之(2024), pp. 34~35

178) 전자기록이전권리에 표시하는 「금상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권리는 제2항 유가증권(간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그러나 토큰화된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공개규제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 금상법을 통해 제1항 유가증권으로 취급함(矢野貴之, 2024, p. 35)

179)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은 등록 시 최소 자본금 5천만엔,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제2종금융상품거래업은 최저 자본금이 천만엔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없음

-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 디지털자산은 대체가능성 유무, 기능 및 특징(지급결제 또는 투자형)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대체가능성 유무에 따라 대체가능토큰(FT)과 NFT를 구분하고, 다시 FT는 기능과 특징에 따라 암호자산, 법정통화 스테이블 코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Ⅲ-2〉 참조)

〈표 Ⅲ-2〉 일본 디지털자산의 유형

구분	특징	유형	근거 법령	요건
대체가능	지급 결제형	암호자산 <sup>1)</sup>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	제1항 암호자산 제2항 암호자산
		법정통화 스테이블 코인 <sup>2)</sup>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전자결제수단
	증권/ 투자/ 금융형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 표시권리 등 <sup>3)</sup>	「금상법」 제29조의2 제1항 제8호	토큰화 유가증권
				전자기록이전권리 적용 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
대체불가		NFT	- <sup>4)</sup>	- <sup>5)</sup>

주: 1) 암호자산은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가의 변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제1호 암호자산) 또는 대가의 변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산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제2호 암호자산) 재산적 가치로 정의함

2) 알고리즘에 의한 수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으로 취급하고 암호자산, 금, 유가증권 등의 상품을 담보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그 구조에 따라 암호자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융파생상품으로 분류함

3)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은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 단서규정에 따라 암호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함

4) 금융청 사무 가이드라인

5) (i) 발행자 등에서 불특정인에 대하여 물품 등의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의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ii) 해당 재산적 가치의 가격이나 수량, 기술적 특성·사양 등을 종합 고려해, 불특정인에 대해서 물품 등의 대가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한정적인 것 등은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요약 정리함

## 나. 일본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

### 1) 암호자산 시장 현황

- 일본 암호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초 5조엔을 초과하는 최고수준의 암호자산 현물거래고를 기록하였다가 2022년 12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그림 III-1] 참고)<sup>180)</sup>
- 대표적 암호자산인 비트코인(BTC)의 세계 시가총액은 2021년 초 1조달러를 초과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 대형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파산 등을 계기로 3천억달러 가까이 하락하였다가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등의 영향으로 1.4조달러를 초과함
- 2023년도는 BTC를 중심으로 암호자산의 가격 상승 및 국내 취급종목의 증가에 수반하여 현물거래고와 계좌수가 증가함<sup>181)</sup>
  - 2023년도의 연간 현물거래고는 11조 3,494억엔(전년도 대비 13% 증가)이고, 현물거래 전체의 90% 이상을 BTC(8조 2,415억엔, 72.62%)·ETH(1조 4,085억엔, 12.41%)·XRP(6,682억엔, 5.89%)가 차지함
- 일본 암호자산 계좌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332만건에서 2023년 990만건으로 약 3배 증가함<sup>182)</sup>
  - 암호자산 가동 계좌수<sup>183)</sup> 역시 2019년 203만건에서 2023년 592만건으로 약 2.9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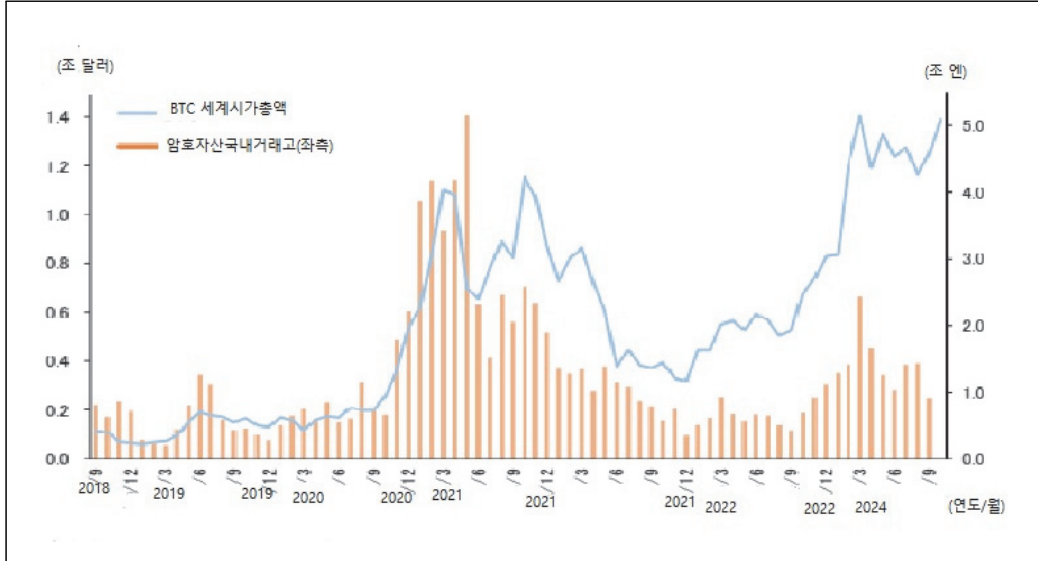
180) 谷合正成(2024), pp. 3~4

181) 日本暗号資産取引業協会(JVCEA), 「暗号資産取引についての年間報告(2023年度)概要」, 2024. 9. 30. [https://jvcea.or.jp/cms/wp-content/themes/jvcea/images/pdf/tokei\\_20240930\\_summary.pdf](https://jvcea.or.jp/cms/wp-content/themes/jvcea/images/pdf/tokei_20240930_summary.pdf), 검색일자: 2025. 2. 11.

182) 谷合正成(2024), p. 5

183) 가동 계좌수는 각 월말 시점 기준 1엔 이상 계좌자산이 있거나 지난 1년간 거래가 출금을 포함한 거래가 있는 계좌의 수를 의미함

[그림 Ⅲ-1] 일본 암호자산(현물)의 국내 거래고 및 비트코인(BTC) 세계 시가 총액의 추이



주: 1. BTC 세계 시가 총액은 매월 1일 시점임  
 자료: 一般社団法人日本暗号資産取引業協会, 「暗号資産取引月次データ」; 谷合正成(2024), p. 4. 図表1

- 암호자산 현물을 수반하지 않는 증거금 거래·신용거래·선물거래 역시 암호자산 거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감소함(〈표 Ⅲ-3〉 참조)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거금 거래의 비중은 암호자산 거래 전체의 약 80~90%를 차지하였지만 자금결제법의 개정으로 증거금 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21년부터 거래 비중이 축소됨<sup>184)</sup>
  - 2023년 기준으로 암호자산 현물 거래금액(비중)과 증거금 거래금액(비중)은 각각 11조 3,494억엔(67.02%), 5조 5,839억엔(32.98%)으로 증거금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184) 길용권(2023), p. 69

〈표 III-3〉 일본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 현황(2019~2024년)

(단위: 억엔, %)

구분	거래액		비중	
	현물	증거금	현물	증거금
2015년	607	270	69.21	30.79
2016년	1조 5,369	1조 9,790	43.71	56.29
2017년	12조 7,140	56조 4,325	18.39	81.61
2018년	9조 4,138	76조 5,300	10.95	89.05
2019년	7조 6,569	69조 2,102	9.96	90.04
2020년	20조 6,050	97조 3,640	17.47	82.53
2021년	28조 5,098	37조 1,821	43.40	56.60
2022년	10조 0,159	14조 8,982	40.20	59.80
2023년	11조 3,494	5조 5,839	67.02	32.98

자료: 一般社団法人日本暗号資産取引業協会, 「暗号資産取引についての年間報告(2023年度)」令和 6年 9月 30日, p. 18; 「暗号資産取引についての年間報告(2019年度)」, 令和 2年 11月 20日, p. 9

## 2)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증권토큰 시장 현황

- 2020년 5월 1일 시행한 「금상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증권토큰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 증권토큰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됨
  - 일본의 상장 유가증권은 이미 증권을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비상장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증권토큰의 발행이 이루어짐<sup>185)</sup>
- 일본 STO협회에 따르면 2023년의 발행 총액은 약 662억엔으로, 2021년의 약 32억엔과 비교하면 약 20배로 증가하여 증권토큰 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됨(〈표 III-4〉 참조)<sup>186)</sup>

185)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2), p. 6

186)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4), p. 2

- 토큰화 유가증권의 경우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증권과 사채가 각각 모집금액(공모) 110억엔(누계)과 14.5억엔(누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자기록이전권리의 경우 익명조합출자지분(GK-TK)<sup>187)</sup>의 모집금액이 자기모집 7.5억엔(누계), 공모 3.3억엔(누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본에서 발행한 증권토큰 대부분은 부동산의 신탁 수익권을 토큰화(이하 부동산 ST)한 것임
- 일본 STO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ST의 발행 모집금액은 1천 222억엔으로 증권토큰 시장에서 ESG채권ST(105억엔), 팬 마케팅ST(36억엔), 주택담보대출채권 ST(15억엔)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sup>188)</sup><sup>189)</sup>

---

187) GK-TK 방식은 익명 조합원이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지위인 익명조합 출자지분(이하 TK)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TK를 토큰화하여 증권을 발행한 것을 의미함(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 2022, p. 6)

188)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4), p. 7

189) ESG채권ST는 환경문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그린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토큰화한 것임. 팬 마케팅ST(사채)는 팬 마케팅 요소를 가진 사채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팬 마케팅이 일반적으로 쿠폰이나 무상 배포 등으로 자사 상품 서비스의 장기적인 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투자를 특전 제공의 전제로 함

〈표 III-4〉 전자기록이전유기증권표시권리 등 발행 상황(2019~2024년 6월)

(단위: 백엔, 건)

증권유형	모집 방법	증권토록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		발행 합계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사채	공모	토론회 유기증권							1,500	2	12,000	2	1,000	1	14,500	5
	자기 모집	토론회 유기증권			100	1	260	2	220	1	170	1	750	5		
	사모 취급	토론회 유기증권									10	1	10	1		
외국투자 법인증권	사모 취급	토론회 유기증권									259	1	259	1		
	공모	토론회 유기증권					2,244	2	18,607	7	43,174	12	45,991	10	110,016	31
주식 등	자기 모집	토론회 유기증권	50	1	52	2									102	3
	공모	전자기록 이전권리					870	1			2,385	2			3,255	3
이명조합 출자지분 (GK-TK)	자기 모집	전자기록 이전권리							778	1	6,685	3			7,463	4
	공모	전자기록 이전권리									100	1	156	1	256	2

〈표 III-4〉의 계속

증권유형	모집 방법	증권토큰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		발행 합계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모집 금액	건수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사모 취급	적용 제외 전자이전권리									1,466	2			1,466	2
합계			50	1	52	2	3,214	4	21,145	12	66,289	24	47,327	14	138,076	57

주: 1. 발행예정액을 포함하고, 2024년 6월 말 남입기준

2. 실만 엔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4), p. 2

## 2. 암호자산 과세제도

### 가. 소비세

- 2017년 6월까지 일본은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에 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비세를 비과세함
  - 2014년 암호자산을 귀금속 등과 같은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세를 과세함
  - 그러나 2017년 세법 개정 시 암호자산을 개정 「자금결제법」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sup>190)</sup>
  
- 그러나 암호자산 매매와 관련된 중개료를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중개와 관련한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고 소비세를 과세함<sup>191)</sup>
  
-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암호자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령하는 이용료는 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대부’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함<sup>192)</sup>
  - 암호자산 교환업자와 암호자산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는 암호자산을 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여한 암호자산과 동종 및 동등한 암호자산과 함께 이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소비세를 과세함
    - 현행 소비세 비과세 대상을 열거한 「소비세법」 별표 제2의2 규정에는 암호자산의 대여는 이자를 대가로 하는 금전의 대출 및 유가증권의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함

190) 일본 「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191) 일본 「소비세법」 제6조 제1항, 별표제2의2 제2호;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192) 国税庁(2024), p. 64

## 나. 소득세

- 일본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정의를 세법에 두지 않고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을 차용하여 암호자산을 정의함<sup>193)</sup>
  
-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2019년 세제 개정을 통해 법제화함<sup>194)</sup>
  - 일본 국세청은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여 암호자산 관련 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데 소득세제는 이러한 국세청의 공개문을 법제화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일본 국세청은 소득세제 목적상 2017년 12월 가상통화에 관한 소득의 계산 방법 등(「仮想通貨に関する所得の計算方法等について(情報)」)과 2018년 11월 가상통화에 관한 세무상 취급(「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을 각각 공개함<sup>195)</sup>
  - 법인세제는 2018년 일본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가 실무대응보고 제38호를 발표하여 회계상 처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기말 평가 등을 법제화하고 2019년 4월 1일 이후 시행함
  - 본문은 국세청의 지침을 토대로 암호자산 관련 소득 과세 취급을 소개함

193)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은 암호자산을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가의 변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제1호 암호자산) 또는 대가의 변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산(가상통화)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제2호 암호자산) 재산적 가치로 정의함(「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과 2020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법령상 용어를 당초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함

194)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2019년 3월 27일과 3월 29일에 각각 성립, 공포되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4월 1일에 시행함. (강동익·홍성희·박수진, 2022, p. 69, 각주 253)

195) 강동익·홍성희·박수진(2022), p. 69, 각주 252; 후자에 대한 최근 개정은 2025년 1월에 있었음

## 1) 개인소득세

### 가) 암호자산 관련 소득 과세제도

#### (1) 개요

- 일본은 과세목적상 암호자산(가상통화)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간주하고 암호자산(가상통화) 관련 소득은 법정통화와의 상대적 관계로 인한 손익으로 원칙적으로 잡소득(기타 잡소득)으로 취급함<sup>196)197)198)</sup>
  - 공적연금 외 잡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적용을 배제함<sup>199)</sup>
- 다만 암호자산 거래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중 3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암호자산 거래 관련 장부서류의 보존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잡소득으로 구분함<sup>200)</sup>
  - 암호자산 소득과 관련한 거래를 기록한 장부서류를 보존한 경우 원칙적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 암호자산 소득과 관련한 거래를 기록한 장부서류를 보존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으로 구분함<sup>201)</sup>

196) 国税庁(2024), p. 68

197) 암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잡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金子宏 2019, p. 261; 泉絢也, 2019, p. 3; 泉絢也, 2018, p. 13; 林賢, 2020, p. 140) 일본 국세청은 양도 소득의 기인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현금, 금전채권, 외국통화와 함께 암호자산을 열거하고 있음(일본 「소득세 기본통달」 35-1)

198) 잡소득은 (i)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 (ii)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iii) 그 외의 잡소득으로 구분함. (i)에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확정출연연금, 적격외국연금 등이 있고 (ii)에는 원고료, 강연료, 실버인재센터 및 공유셰어링 이코노미 등의 부수입에 의한 소득 등이 있음. (iii)에는 개인연금, 상조연금, 암호자산 거래 등 (i)과 (ii) 외의 것에 의한 소득이 있음(「令和6年分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確定申告の手引き」, pp. 11~12, [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24/pdf/001.pdf](http://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24/pdf/001.pdf), 검색일자 2025. 2. 11.; 国税庁, 「法第35条《雑所得》関係」,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9.htm>, 검색일자: 2025. 2. 12.)

199) 일본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200) 国税庁(2024), p. 16

201) 그러나 그 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취급함(国税庁, 「法第35条《雑所得》関係(その他雑所得の例示)」, <https://www.>

-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sup>202)</sup>
- 그리고 암호자산 거래가 사업소득 등의 기인이 되는 행위에 부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취급함
  -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재고자산 등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을 사용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함

〈표 Ⅲ-5〉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 구분

암호자산 거래 수입금액		거래기록 및 장부 보존 여부	소득 구분
300만엔	이하	부	잡소득(기타 잡소득)
	초과	부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초과	여	사업소득 <sup>1)</sup>

주: 1) 암호자산 거래가 사업소득 등의 기인되는 행위에 부수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함  
 자료: 国税庁(2024), p. 16

- 잡소득 금액의 계산상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통산)하거나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sup>203)</sup>
  -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함<sup>204)</sup>
  - 잡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 소득은 종합과세하며 5~45%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sup>205)</sup>

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9.htm, 검색일자: 2025. 2. 11.)

202)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달 35-2(7)

203) 일본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 손실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산립소득·양도소득금액 계산상 발생한 손실에 한함

204) 암호화폐 세금계산 플랫폼 Money Forward, <https://biz.moneyforward.com>

205) 일본 소득세 세율(일본 「소득세법」 제89조)

(단위: 천엔,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949	5	9,000~17,999	33
1,950~3,299	10	18,000~39,999	40
3,300~6,949	20	40,000~	45
6,950~8,999	23	-	-

## (2) 암호자산 거래(현물) 과세 취급

- 암호자산의 매각, 암호자산 간 교환,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대가로 암호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등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잡소득(기타 잡소득)으로 과세함<sup>206)</sup>
  -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암호자산 양도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각 등을 위해 암호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할 수 있음
  
- 마이닝(マイニング), 스테이킹(ステーキング), 렌딩(レンディング)을 통하여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임<sup>207)</sup>
  - 그러나 하드포크(ハードフォーク) 또는 분열(분기)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
    - 분열(분기)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암호자산은 분열(분기)시점의 거래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은 영(0)엔으로 함
  - 에어드랍(エアドロップ)으로 새로 취득한 암호자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지만 분열(분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임<sup>208)</sup>
  
-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암호자산 양도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206) 일본 「소득세법」 제35조

207) 일본 「소득세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国税庁(2024), p. 13

208) Gtax, 「仮想通貨(暗号資産)にかかる税金と確定申告の流れを税理士がわかりやすく解説!所得の分類や計算方法について【2024年度最新】」, <https://crypto-city.net/media/crypto-tax-101>, 검색일자: 2025. 2. 12.

- (수입금액)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수입금액은 매각 시는 양도가액이고, 교환이나 대가의 지급인 경우에는 취득한 암호자산(교환의 경우)의 시가 또는 상품 및 용역의 시가로 함<sup>209)</sup>
  
- (필요경비) 암호자산 거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원가와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음<sup>210)</sup>
  -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매각 시 지불한 수수료(전자)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회선이용료, PC 구입비용 등(후자)이 있음
    - 후자의 경우 암호자산 매각을 위해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공제함
  - 만일 암호자산 거래 소득을 사업소득이나 잡소득(업무와 관련되는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도원가 외 판매비, 일반 관리비 그 외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취득가액) 암호자산 취득가액은 그 취득 방법에 따라 달리 결정함<sup>211)212)</sup>
  -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 구입 시 지불한 대가액<sup>213)</sup>
  - 자기가 발행하여 취득한 경우: 그 발행에 위해 소요된 비용액<sup>214)</sup>
  - 증여·유증으로 취득한 경우(사인증여, 상속, 포괄유증 등을 제외): 증여·유증 시 암호자산의 가액(시가)<sup>215)</sup>
  -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 상속, 포괄유증 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피상속인이 암호자산에 적용하였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유하는 암호자산 평가액)<sup>216)</sup>

209) 国税庁(2024), pp. 5~7

210) 일본「소득세법」 제37조, 제45조, 48의2조;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国税庁(2024), p. 17.

211)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国税庁(2024), p. 10

212) 일본「법인세법」 제61조

213)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1항 제1호

214)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1항 제2호; 일본「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 제2항

215)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2항 제1호

216) 일본「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괄호; 일본「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2항 제1호

- 저액 양도에 의해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이 시가의 70% 상당액 미만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의 70% 상당액과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sup>217)</sup>
  - 그 외 암호자산 간의 교환, 마이닝(채굴), 분열(분기) 등에 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암호자산 간의 교환, 마이닝 경우 취득시점의 가액(시가)이며 분열(분기)의 경우 취득가액은 영(0)엔<sup>218)</sup>
- (양도원가) 복수의 암호자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매각과 관련한 암호자산의 양도원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sup>219)</sup>으로 평가하여 계산함<sup>220)</sup>
- 암호자산의 평가방법은 최초로 암호자산을 취득한 연도분의 확정신고기한(다음해 3월 15일)까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신고하여야 함
    - 평가방법 무신고의 경우 법정 평가방법은 총평균법(법인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함<sup>221)</sup>
  - 암호자산 취득가액이나 매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 이력이나 은행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이용하거나 취득가액 추계 계산을 허용함<sup>222)</sup>
    - 국외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통한 거래 또는 개인 간 암호자산 거래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상황, 거래 이력,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공개 거래시세를 이용하여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이나 매각가액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함<sup>223)</sup>

217) 일본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2항 제2호

218)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6조 제1항 제3호

219) 총평균법은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에 대해 연초 시점에 보유하는 암호자산의 평가액과 연중에 취득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과의 합계액을 이들 암호자산의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연말시점의 1단위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 이동평균법은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에 대해 암호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가액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장부가 총액을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취득시점의 평균단가로 하고, 연말시점에 가장 가까운 날에 산출된 취득시점의 평균단가를 연말시점의 1단위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4]

220) 일본 「소득세법」 제48조의2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2조; 国税庁(2024), pp. 18~21

221)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 제119의5조

222) 国税庁(2024), p. 25

223)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암호자산 교환업자와의 거래는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교부하는 연간 거래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国税庁, 2024, p. 25)

- 매각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각가액의 5%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계 계산할 수 있음<sup>224)</sup>
- (암호자산 무상·저가양도) 개인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대가에 의한 암호자산을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sup>225)</sup>
  - 암호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암호자산의 가액(시가)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개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sup>226)</sup>
  -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대가에 의한 양도(저가 양도)’는 시가의 70% 상당액 미만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며 양수자(개인)에게는 증여세를 적용함<sup>227)</sup>
    -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하는 금액’은 시가의 70% 상당액에서 그 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법인이 암호자산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과세함<sup>228)</sup>
    - 양도자(법인)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으로 산입함<sup>229)</sup>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으로 산입함
    -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이를 일시 소득으로 과세함<sup>230)</sup>

224)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달」 48의2-4; 이러한 취득가액 산출방법은 양도소득을 기인하는 자산인 유가증권의 경우(「기본통달」 48-8)와 동일하지만 일본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을 양도소득을 기인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細川健, 2024, p. 101)

225) 2019년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일본 소득세법 제40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国税庁 (2024), pp. 30~31)

226) 양수자가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하는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함(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227) 일본 「소득세법」 제40조

228)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229)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230) 일본 「소득세법」 제34조, 일본 「소득세법 기본통칙」 34-1; 증여액에서 50만엔의 특별공제액을

〈표 III-6〉 암호자산 무상·저가 양도 시 과세 취급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과세 취급	
		증여액	과세 취급	증여액	과세 취급
개인	개인	시가의 70% -대가액 (무상 양도: 시가)	소득세 과세	시가의 70% -대가액 (무상 양도: 시가)	증여세 과세
	법인	시가의 70% -대가액 (무상 양도: 시가)	소득세 과세	시가-대가액 (무상 양도: 시가)	법인세 과세
법인	개인	시가-대가액	법인세 과세	시가-대가액	소득세 과세 <sup>1)</sup>
	법인	시가-대가액	법인세 과세	시가-대가액	법인세 과세 <sup>2)</sup>

주: 1) 일시 소득으로 과세하고, 만일 양수자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2)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함

자료: 国税庁(2024), pp. 30~31; 細川健(2024), pp. 109~110

### (3)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 과세 취급

- 암호자산 교환업체<sup>231)</sup>를 통한 암호자산 증거금(証拠金) 거래<sup>232)</sup>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의 결제일이 속하는 연도에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함<sup>233)</sup>
-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는 「금융법」상의 금융상품선물거래 등에 해당하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또는 단일세율의 적용 없이 종합과세함<sup>234)</sup>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소득으로 과세함(일본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3항);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일본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231) 암호자산 교환업체는 암호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수반하지 않는 차금결제(差金決済) 거래, 레버리지(バレッジ) 거래, 증거금(証拠金) 등을 제공함(林賢, 2020, p. 133)

232) 증거금 거래는 법정통화 또는 암호자산을 증거금으로 하여 레버리지(배율)를 설정한 후 암호자산 거래소로부터 증거금에 따라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증거금에 따른 레버리지 범위에서 거래를 함. 이때 암호자산 현물이 아닌 매각 또는 매입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고 차액을 결제함(ゼロス監査法人, 「暗号資産の証拠金取引で売却益がある場合」, 2022. 8. 28., <https://zelos.co.jp/crypt-margin-trading-tax>, 검색일자: 2023. 1. 10.)

233) 일본 「소득세법」 제35조;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의14조

234) 国税庁(2024), p. 33

- 금상법상 금융상품선물거래에 해당하는 금·곡물 등 원자재 선물 거래나 외화 증거금(FX) 거래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분리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sup>235)</sup>

- 암호자산 신용거래<sup>236)</sup>로 인한 소득 역시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함
  - 신용거래의 방법으로 암호자산을 매도(매수)하고 동종의 암호자산을 매수(매도)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암호자산 매도로 인해 통상적으로 얻어야 하는 대가액(매도가액)과 그 매수와 관련된 암호자산의 대가액(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함<sup>237)</sup>
  - 양도원가는 개별법으로 평가하여 계산함

#### 나)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세 과세 현황

-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과 2023년 납세자 신고인원과 신고 소득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함(〈표 III-7〉 참조)
  -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그 외의 잡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2021년 82천명, 2022년 35천명, 2023년 42천명으로 2021년 최고 수준이었다가 감소함
  -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포함한 그 외의 잡소득 금액은 2021년 3,348억엔, 2022년 526억엔, 2023년 514억엔으로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함

235) 20.315%(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 및 특정 요건 하에 3년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됨(栗原克文, 2021, p. 44)

236) 고객이 업자에게 보증금으로 금전이나 암호자산을 예탁하고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지정한 배율을 상환으로 암호자산을 차입하여 암호자산을 매매·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함[林賢, 2020, p. 133: 「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13]

237)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7조, 所基通達 36·37 共-22; 国税庁(2024), p. 33

〈표 III-7〉 암호자산 거래 관련 ‘그 외의 잡소득’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천명, 억엔)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득세 등 확정신고분	인원	22,493	22,855	22,951	23,243	
	소득금액	868,799	-	942,659	993,289	
잡소득	인원	5,665	-	5,661	5,687	
	소득금액	82,922	-	82,829	82,231	
암호자산 관련 그 외의 잡소득	인원 <sup>1)</sup>	-	82	35	42	
	소득금액 <sup>1)</sup>	-	3,348	526	514	

주: 1. 소득세 등 확정신고 제출 인원 및 소득금액 중에서 잡소득 및 암호자산 관련 그 외의 잡소득의 신고 인원과 소득금액을 연도별로 표시함

2. 일본 국세청은 2021년 확정신고 제출 인원 및 소득금액 관련 정보, 2020년 암호자산 관련 그 외의 잡소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3. 그 외의 잡소득은 잡소득 중 ‘공적연금의 잡소득’,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을 제외한 잡소득을 의미함

1) 인원은 그 외 잡소득이 있는 소득세 신고인 중 암호자산 거래 관련 수입액이 있는 신고인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에는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수입 외의 잡소득(개인연금보험 등)을 포함함

자료: 国税庁, 「연도별 所得税等, 消費税及び贈与税の確定申告状況等について(報道発表資料)」, p. 13. (表 2), p. 14. (表 3-1)과 (表 3-2), p. 19. (表 10), <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 검색일자: 2025. 2. 2.

□ 2020~2023년 암호자산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sup>238)</sup>에 따르면, 암호자산(가상통화) 소득의 신고 누락 및 추정세액은 2022년 최고 수준이었다가 2023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sup>239)</sup>

○ 암호자산(가상통화) 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수감 건은 2020년(432건) 이후 2021년(444건), 2022년(615건), 2023년(535건) 매년 증가함

238) 일본 국세청 전자상거래전문조사팀은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지조사(특별 조사·일반 조사)를 수감함. 실지 조사는 고액의 부정 계산이 전망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 조사는 다액의 탈루가 전망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의 일수(1건당 10일 이상을 기준)를 확보해 조사함(国税庁, 「令和4事務年度 所得税及び消費税調査等の状況」,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r05/shotoku\\_shohi/index.htm](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r05/shotoku_shohi/index.htm), 검색일자: 2025. 2. 2.)

239) 国税庁, 「연도별 所得税及び消費税調査等の状況」, <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press.htm>, 검색일자: 2025. 2. 2.

- 암호자산 신고 누락 등 위법 건은 2020년 398건, 2021년 405건, 2022년 548건, 2023년 491건임
- 신고 누락 소득금액은 2020년 106억엔, 2021년 162억엔, 2022년 189억엔, 2023년 126억엔임
- 세무조사로 인한 암호자산(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액은 2020년 34억엔, 2021년 53억엔, 2022년 64억엔, 2023년 35억엔임

〈표 Ⅲ-8〉 암호자산(가상통화) 등 거래 세무조사 현황

(단위: 건, 억엔)

구분 \ 연도	2020년	2021	2022년	2023년
조사 건	432	444	615	535
신고 누락 등 위법 건	398	405	548	491
신고 누락 소득금액	106	162	189	126
추징 세액	34	53	64	35

자료: 国税庁, 「연도별 所得税及び消費税調査等の状況」, <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press.htm>, 검색일자: 2025. 2. 2.

## 2) 법인(소득)세

- 본문은 ‘1) 개인 소득세’ 편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 일본 법인세법은 암호자산 기말 평가를 시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평가방법 및 시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암호자산을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법인의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암호자산 매각 등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날(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함<sup>240)</sup>

- 양도손익은 양도 시에 있어서 유상에 의해 그 암호자산의 양도에 의해 통상 얻어야 할 대가의 액과 그 암호자산의 양도원가의 차액으로 계산함
- (양도원가) 양도원가는 1단위당 장부가액에 양도한 암호자산의 수량으로 계산하며, 1단위당 장부가액은 이동평균법(법정 평가방법) 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출함
- 이때 1단위당 장부가액의 산출방법은 암호자산 종류별로, 그리고 다음 구분마다 설정하여야 함<sup>241)</sup>
  - (i)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sup>242)</sup>으로 자기발행 암호자산<sup>243)</sup>에 해당하지 않는 것
  - (ii)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으로 자기발행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것
  - (iii) 특정 자기발행 암호자산<sup>244)</sup>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 (iv) 위 (i)~(iii)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암호자산
- (사업연도 말 평가) 법인이 사업연도 말 보유하는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암호자산('시장 암호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함<sup>245)</sup>
-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암호자산이라도 다음의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함
  - 특정 자기발행 암호자산

240) 일본 「법인세법」 제61조; 国税庁(2024), p. 35

241) 国税庁(2024), pp. 36~37

242)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은 양도에 대한 제한 및 기타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암호 자산으로, 특정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공표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암호자산을 말함

243) 자기발행 암호자산은 법인이 발행하고 그 발행 시부터 계속해서 보유하는 암호자산을 말함

244) 특정 자기발행 암호자산은 ICO를 통해 자금조달하면서 자기발행한 암호자산으로서 그 발행 시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암호자산의 발행 시부터 계속해서 양도에 대한 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일정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일정한 것이란 (i) 그 암호자산에 대해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 기술적 조치가 취해져 있거나 (ii) 그 암호자산이 특정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것(수익자 과세신탁에 한함)(일본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조 제2항 제1호, 제2호)

245) 国税庁(2024), p. 38; 일본 「법인세법」 제61조

-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으로 자기발행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것
-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자기발행 암호자산을 제외)에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 시가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sup>246)</sup>
- 스테이킹(ステーキング) 목적으로 락업(ロックアップ)상태에 있는 시장 암호자산이나 대여 중인 시장 암호자산은 (i) 암호자산과 관련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ii) 암호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고 (iii) 자기의 계산으로 시장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시가법으로 평가함<sup>247)</sup>
- (시가) 시장 암호자산의 종류별로 적용하는 시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248)</sup>
  - (i) 가격 등 공표자에 의해 공표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장 암호자산 최종 매매가격<sup>249)</sup>
  - (ii) 가격 등 공표자에 의해 공표된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시장 암호자산의 최종 교환비율<sup>250)</sup> × 그 교환비율로 교환되는 다른 시장 암호자산과 관련된 상기 (i)의 가격
- (시장 암호자산) 법인세법상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암호자산은 법인이 가진 암호자산 중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sup>251)252)</sup>
  - (i) 계속적으로 매매가격 등이 공표되고, 그 공표되는 매매가격 등이 그 암호자산의 매매가격 또는 교환비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

246) 시장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이지만 시가법을 선택할 수 있음

247) 国税庁(2024), pp. 43~44; 일본 「법인세법」 제61조;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7조

248) 国税庁(2024), p. 38; 일본 「법인세법」 제61조

249) 공표된 같은 날의 최종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날 전의 최종 매매가격이 공표된 날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최종 매매가격으로 함

250) 공표된 같은 날의 최종 교환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날 전의 최종 교환비율이 공표된 날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최종 교환비율로 함

251) 国税庁(2024), p. 39; 일본 「법인세법」 제61조;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7

252)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automated market maker)에 의해 현시점의 교환비율이 공개되고 그 공개된 교환비율에 근거하여 수시로 암호자산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활발한 시장으로 봄(国税庁, 2024, p. 41)

- (ii) 계속적으로 상기 (i)의 매매가격 등이 공표되기 위해 충분한 수량 및 빈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 (iii) 위 (i)의 매매가격 등의 공표가 그 법인 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위 (ii)의 거래가 주로 그 법인에 의해 자기의 계산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닐 것<sup>253)</sup>

#### 다. 암호자산 국제거래 과세제도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일본 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내국법인)와 비거주자(외국법인)로 구분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함
- 현행 일본 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의 암호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음<sup>254)</sup>
  - 일본 국세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 등)가 보유하는 암호자산을 일본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라는 입장을 공개함
  - 현행 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함)’와 관련한 소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는데, 국외에 거주하는 자의 암호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상에 존재하는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 국내에 있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253) (i)의 매매가격 등을 공표하는 자가 자기뿐이고, 또한 그 매매가격 등이 주로 자기의 계산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인 경우에는 시가를 스스로 창출·조종함으로써 이익 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가격은 법인세의 관점에서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마련된 요건임

254) 国税庁(2024), p. 14;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212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81조; 일본 「법인세법」 제138조;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8조

-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일정한 것
- 부동산 관련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다만 일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비거주자 등의 암호자산 거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명백히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차후 과세 가능성은 존재함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및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항 제2호)<sup>255)</sup>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81조 제1항 아목)<sup>256)</sup>
  - 그 외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으로 일정한 것(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항 제17호)
- 일본 세법은 비거주자 등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실시하는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 등 관련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현행 비거주자의 파생상품거래 과세를 고려한다면, 항구적 시설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자산의 운용·보유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sup>257)</sup>

255) 암호자산 거래를 비거주자와 암호자산 교환업자 간 계약관계를 토대로 비거주자의 자금을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또는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林賢, 2020, p. 161);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열거한 위임령에서 암호자산을 열거하지 않음(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80조 제1항; 林賢(2020), p. 149);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80조 제1항은 국채,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등, 약속어음, 거주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해당 거주자가 실시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 외의 것, 국내에 있는 영업소 또는 계약체결 대리인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등을 열거함

256) 암호자산 이전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규정에 의해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林賢, 2020, p. 159)

257) 細川健(2024), pp. 49~50; 크로스보더로 실시하는 금상법의 시장파생상품거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파생상품소득’)은 국내자산의 운용·보유 소득에 포함한다는 기존 규정을 2022년 세제 개정을 통해 항구적 시설 등에 귀속되는 파생상품소득을 제외하고는 국

### 3. 토큰증권 과세제도

#### 가. 소비세

- 현행 일본 「소비세법」은 다음 유가증권의 양도를 비과세 거래로 규정함<sup>258)</sup>259)
  - 「금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골프장 이용 주식 등 제외)<sup>260)</sup>
  -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동회사, 협동조합 등의 지분<sup>261)</sup>
  - 익명조합 출자자 지분<sup>262)</sup>
  
- 일본은 유가증권을 토큰화한 증권토큰(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양도에 대한 소비세 취급을 달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보임

---

내자산의 운용·보유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정함(国税庁, 「クロスボーダーで行うデリバティブ取引の決済により生ずる所得の取扱いについて」, 2022, <https://www.nta.go.jp/information/other/0021012-080.pdf>, 검색일자: 2025. 2. 17.);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 제2호; 항구적 시설을 갖지 않는 비거주자가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업자와의 간에 매장 외환 증거금 거래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과의 다툼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재결에서 “심사청구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지 않는 비거주자 기간에 국내 금융상품 거래업체와의 간 매장 외환 증거금 거래에 관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함(国税不服審判所裁決 平成 31年 3月 25日 裁決 事例集 114号). 이 판결은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의 권리나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매장 외환 증거금 거래의 계약상의 지위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포지션과 관련된 차액결제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거래이므로 자산의 운용 및 보유 또는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161조 1항 2호 또는 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柳谷憲司, 「非居住者が暗号資産(仮想通貨)FX取引を行う場合の課税上のリスク」, 2022. 1. 7. <https://willow8-tax.com/1506/>, 검색일자: 2025. 2. 17.)

258) 일본 「소비세법」 제6조 별표 제1

259) 国税庁, 「非課税となる有価証券の範囲と課税売上割合の関係」, <https://www.nta.go.jp/law/shitsugi/shohi/17/09.htm>, 검색일자: 2025. 2. 18.

260) 일본 「소비세법」 별표 제2 제2호

261)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62) 일본 「소비세법」 별표 제2 제2호;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国税庁, 「匿名組合の出資者の持分の譲渡」, <https://www.nta.go.jp/law/shitsugi/shohi/24/01.htm>, 검색일자: 2025. 2. 18.

## 나. 소득세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관련 규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 것과 달리 세법은 최근까지 개정된 바가 없는데, 기존 과세체계를 증권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음

### 1) 토큰화 유가증권

- (토큰화 유가증권) 토큰화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제1항 유가증권을 토큰화한 것으로 관련 소득을 제1항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과세처리함
  - 제1호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예시로 들어 관련 소득 규정을 살펴봄
  
-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지만,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소액배당<sup>263)</sup>은 분리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sup>264)</sup>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sup>265)</sup>
  - 상장주식 배당소득은 확정신고 없이 20.315%(지방세 5% 등 포함)<sup>266)</sup>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sup>267)</sup>

263) 1회 수령 배당금액이 법정 산식(10만엔 × 배당 계산기간(직전 배당금 지급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배당금 지급 기준일까지의 기간)의 월수 ÷ 12)으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소액배당에 해당함

264)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5. 2. 18.;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은 소액배당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과세함(김문정·이형민·김수린, 2024, p. 100)

265) 일본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일본은 우리나라 인퓨테이션(imputation)시스템과 달리 그로스 업(gross-up)을 적용하지 않음

266) 소득세에 부가하는 부흥특별소비세 2.1%와 지방세 5%를 포함함

267) 대주주의 경우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 20.42%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세는 징수하지 않음(김문정·이형민·김수린, 2024, p. 102)

- 비상장주식 등 배당소득과 상장주식 대주주 등이 수령하는 배당 등은 20.42%(지방세 불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확정신고 종합과세함<sup>268)</sup>
- 종합과세 확정신고 시 5.105~45.945%(지방세 10% 별도)의 7단계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의 경우 20.315%(지방세 5% 등 포함)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20.315%(지방세 등 포함)의 단일세율로 과세함<sup>269)</sup>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매각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함
  -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5%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 2) 전자기록이전권리

- (전자기록이전권리)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신탁수익증권, 합동회사 등 사원권 등, 집단투자체제지분(集團投資スキーム持分) 등 제2항 유가증권(간주유가증권)을 토큰화한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증권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함
- 본문은 집단투자체제지분 중 모집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익명조합출자지분을 중심으로 세무상 취급을 정리함<sup>270)271)</sup>

268) 国税庁,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5.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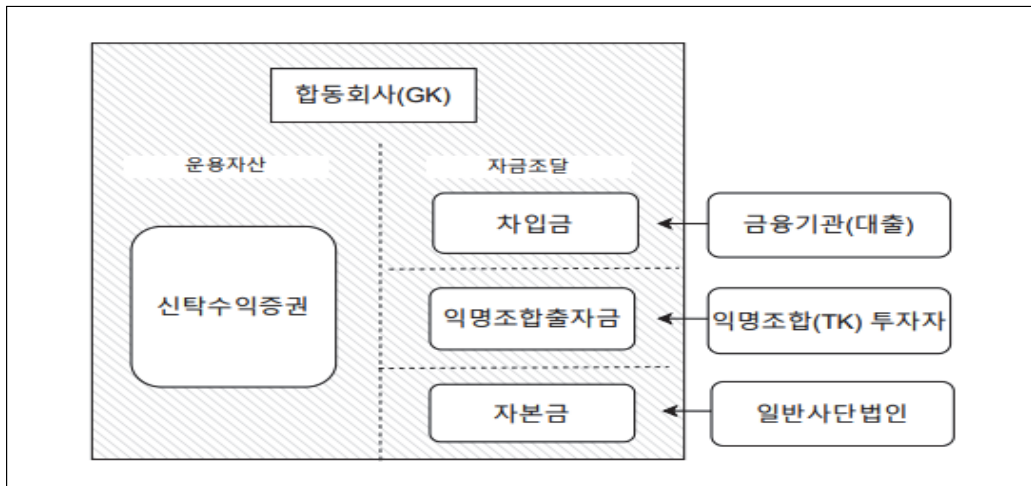
269) 国税庁,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5. 2. 18.

270) 집단투자체제지분은 조합계약, 익명조합계약(GK-TK),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 계약에 의거한 권리, 사단법인의 사원권 또는 기타 권리 중 당해 권리를 갖는 자(출자자)가 출자 또는 각출한 금전 등을 출당하여 당해 재산을 이용한 사업에서 행하고,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 또는 당해 출자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이희경, 2022, p. 235; 오성근, 2005, p. 214)

271) 일본의 집합투자체제지분은 미국 증권법상 유가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이나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상당하는 개념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이희경, 2022, p. 235; 오성근, 2005, p. 212).

- 본문의 내용을 돕기 위해 익명조합의 이용형태 중 하나인 GK-TK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봄
  - GK-TK 체계는 자산 증권화 목적으로 합동회사(Godo Kaisha, GK)와 익명조합(Tokumei Kumiai, TK)을 결합한 투자체계임
  - GK-TK 체계의 투자자는 특수목적회사(SPC)인 합동회사(GK)<sup>272</sup>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TK)<sup>273</sup>을 통해 출자하고, GK으로부터의 배당은 투자자별 TK 출자 지분에 따라 수령함
    - 투자대상은 부동산, 선박,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등이 있으며, 합동회사가 투자 대상에 직접 자금을 공급함

[그림 Ⅲ-2] 일본 GK-TK 체계



자료: 콘라이즈회계事務所, 「【TK-GK】匿名組合-合同会社スキームとは-証券化を分かりやすく①」, <https://conrise.jp/tk-gk/>, 검색일자: 2025. 2. 18.

272) 합동회사(GK)는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와 달리 결산 공고 의무가 없고 회사 설립 수속이 간소화됨

273)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에서 영업자로의 출자와 영업자의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상법」 535조), 일반적으로 이 익명조합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 관계를 익명조합이라고 함(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 2024b, p. 9). 익명조합(TK)은 「민법」상 임의조합과 달리 출자자는 유한책임을 부담함(<https://www.media.soraichi-fund.jp/crowdfunding/post-14.html>, 검색일자: 2025. 2. 18.)

- GK-TK 체계에서는 투자수익이 합동회사(GK)와 익명조합(TK)의 2단계를 거쳐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구조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GK-TK 체계에서 투자수익으로 과세되는 것은 투자자가 익명조합(TK)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한함
- 합동회사(GK)는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하여 익명조합원인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당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음<sup>274)</sup>
  - 한편 익명조합(GK)은 법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자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의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함(도관과세)<sup>275)</sup>
  - 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하여 영업자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는 잡소득으로 구분함<sup>276)</sup>
    - 익명조합으로부터의 분배금은 20.4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과세하며 5.105~45.945%(지방세 10% 별도)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 익명조합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은 5.105~45.945%(지방세 10% 별도)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함<sup>277)</sup>
    -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소득과의 손익통산하거나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일본 소득세법은 전자기록이전권리(증권토큰)의 본래 내용에 따라 종래대로 과세 처리함
- 전자기록이전권리인 집단투자체계지분(익명조합출자지분)이 비록 「금상법」상 제1항 유가증권으로 취급받더라도, 세무목적상으로는 제2항 간주유가증권에 관한 과세규정을 적용함<sup>278)</sup>
    - 익명조합 자체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 단계에서 소득

274) 「법인세 기본통달」 14-1-3 匿名組合契約に係る損益

275) 景山智全(2004), p. 237

276) 所得税基本通達 36・37共-21 組合の所得計算; 다만 익명조합사업을 영업자와 함께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각종소득으로 구분함

277)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2024b), p. 24

278) 전자기록이전권리의 자율규제기관인 일본STO협회는 유동성이 확보된 전자기록이전권리의 집단투자체계지분에 대해 제1종 유가증권 등과 유사한 과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나(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 2024b)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규정이 개정된 바 없음

세를 과세하며, 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영업자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는 잡소득으로 처리함

〈표 Ⅲ-9〉 증권토큰에 대한 금상법 및 소득세법상 취급

구분	주식		집단투자체제지분	
	제1항 유가증권	토큰화 유가증권	제2항 유가증권 (간주유가증권)	전자기록 이전권리
금상법상 취급	제1항 유가증권	제1항 유가증권	제2항 유가증권	제1항 유가증권
소득세법	증권 분류	제1항 유가증권	제2항 유가증권	제2항 유가증권
	수익분배	소득구분	배당소득	잡소득
		과세방법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중 택1	종합과세(5~45%)
	양도손익	원천징수세율	20.315%	20.42%
		과세방법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	20.315%	5~45%		

자료: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

#### 4. 전자결제수단(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 과세제도

##### 가. 소비세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양도는 지불수단 등의 양도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비과세함<sup>279)</sup>
- 일본은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을 2023년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의 전자결제수단(제2조 제5항)으로 정의하여 지불수단으로 취급함

279) 일본 「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国税庁(2024), p. 63

## 나. 소득세

- 일본 세법은 전자결제수단을 요구불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취급함<sup>280)</sup>
  - 전자결제수단은 법정통화의 가치와 연동된 가격으로 발행되며, 액면가액(券面額)에 기초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을 약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으므로 요구불예금과 유사함
  
- (취득가액) 법인이 전자결제수단을 금전으로 취득한 경우 전자결제수단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함<sup>281)</sup>
  - 다만 인도일에 그 전자결제수단의 액면가액에 표시한 가액을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실제 불입한 금전금액과 그 액면가액 간 차액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 액면가액에 표시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산입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손익) 법인이 전자결제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함<sup>282)</sup>
  -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액이 그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 산입 제한 규정을 적용함
  
- (사업연도 말 평가) 사업연도 말 전자결제수단은 세무상 금전채권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sup>283)</sup>
  - 세무상 금전채권은 기말 시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결제수단을 금전채권으로 취급하므로 시가로 평가하지 않음<sup>284)</sup>

280) 国税庁(2024), p. 57

281) 国税庁(2024), p. 57;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제37조

282) 国税庁(2024), p. 58;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제22의2조, 제37조

283) 国税庁(2024), p. 59; 일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다만 외국통화 표시 전자결제수단은 세무상 단기 외화표시채권 외 외화채권으로 취급하여 발생 시 환율로 평가하지만, 선택적으로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함<sup>285)</sup>

## 5. NFT 과세제도

- 일본 국세청은 2023년 1월 13일자로 디지털아트 NFT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및 소득세 등 과세지침<sup>286)</sup>을 공개하여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과세 목적상 NFT를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유일한 성질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담보하는 기능이나 거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토큰이라고 규정함<sup>287)</sup>
- NFT 거래 관련 과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아트 NFT 거래를 간략하게 소개함 ([그림 III-3] 참조)
  - 온라인 플랫폼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고 NFT의 보관, 표시, 매매, 교환 등을 수행함
  - 디지털아트 등의 창작자인 저작권자가 마켓플레이스에 NFT를 출품하고, 출품한 NFT를 제3자가 구입하는 거래를 1차 유통이라 하고, 추가적인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를 2차 유통이라 함
  -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2차 유통 시 전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로열티(저작권료)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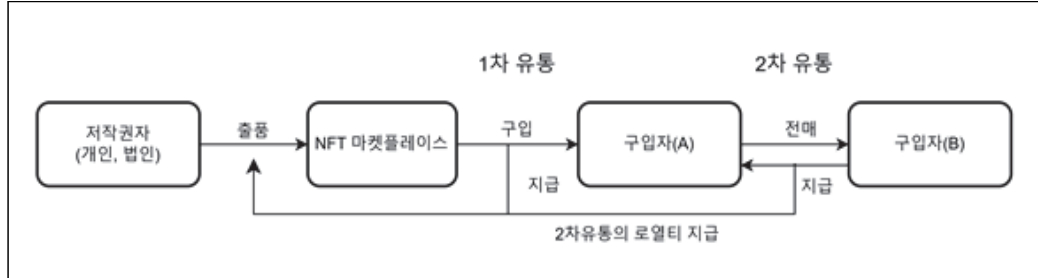
284) 단 특정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등은 적용하지 않음

285) 国税庁(2024), p. 60; 일본 「법인세법」 제61의9조

286) 国税庁,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令和 5年 1月 13日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shotoku/shinkoku/0022012-080.pdf>, 검색일자: 2025. 2. 11.

287) 国税庁(2023), p. 1

[그림 III-3] NFT 거래 흐름



자료: 税務士法人山田&パートナーズ, 「NFTと税務」, <https://www.yamada-partners.jp/research-report/20230720>, 검색일자: 2025. 2. 16.; 細川健(2024), p. 19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

## 가. 소비세

- 디지털아트 제작자(저작권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디지털아트 NFT를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차 거래), 해당 거래를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으로 보고 소비세를 과세함<sup>288)</sup>
  - 디지털아트 NFT의 양도(제1차 거래)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행해지는 ‘저작물<sup>289)</sup>의 이용의 허락’에 관련된 거래로 인정하여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으로 취급함<sup>290)</sup>
  -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주소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sup>291)</sup>
- 디지털아트 NFT 최초 매입자(전매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해당 NFT를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제2차 거래), 해당 거래를 역무의 제공으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함

288) 国税庁(2023), p. 17.

289)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

290) 일본 「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3

291) 일본 「소비세법」 제4조 제3항 제3호

- 제2차 거래는 최초 매입자(전매자)는 디지털아트 제작자(저작권자)로부터 해당 디지털아트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용의 허락과 관련한 권리(이용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취급함<sup>292)</sup>
  - 최초 매입자(전매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로 사업으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 해당 국내 사업자에게 소비세를 과세함
- 최초 매입자(전매자)의 해당 양도와 관련되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sup>293)294)</sup>

〈표 Ⅲ-10〉 NFT 거래에 대한 소비세 취급

NFT 거래	1차 유통	2차 유통
거래의 성격	(저작권) 이용의 허락	이용의 허락 관련 권리의 양도
소비세 과세대상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	권리의 양도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요약함

## 나. 소득세

### 1) 1차 유통

- (유상 양도) 디지털아트 제작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디지털아트 NFT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함<sup>295)</sup>

292)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 인접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며, 저작물 자체의 이용 허락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매입자가 양도한 디지털아트 NFT는 이용 허락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취급함(国税庁, 2023, p. 19)

293) 일본 「소비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괄호;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

294) 마켓플레이스의 이용규약 등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상 NFT의 양도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국내 거래 여부의 판정은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는 자의 주소에 따라 판정함(일본 「소비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괄호;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295) 国税庁(2023), pp. 3~4; 일본 「소득세법」 제27조, 제35조, 제37조, 제69조;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2의2조

- 1차 유통의 거래를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과 관련한 거래로 취급하고 디지털아트 제작자(개인)의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 대가를 마켓플레이스에서 통화로 유통되는 토큰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토큰의 시가임
    - 대가로 수령한 토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한 NFT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양도한 NFT의 취득가액 등)를 양도가액으로 함
  - 디지털아트 제작자가 법인인 경우 디지털아트 NFT를 양도하여 적절한 대가를 얻은 경우 그 양도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함
  - 한편 비거주자인 제작자가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sup>296)</sup>
    -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과 관련한 거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증여) 제작자가 디지털아트 NFT를 제3자(개인)에게 증여하여 해당 제3자에게 디지털아트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sup>297)</sup>
- 다만 법인 제작자가 디지털아트 NFT를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함<sup>298)</sup>
    - NFT의 증여 시 시가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함

## 2) 2차 유통

- 디지털아트 NFT의 최초 구입자(개인)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전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sup>299)</sup>

296) 国税庁(2023), p. 6

297) 国税庁(2023), p. 5; 일본 「소득세법」 제36조; 다만 증여로 디지털아트 NFT를 취득한 개인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国税庁, 2023, p. 14)

298)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2의2조, 제37조

299) 国税庁(2023), p. 7

- 양도한 NFT가 양도소득에 기인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함<sup>300)</sup>
-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특별공제(50만엔)를 하여 산출함
  - 양도가액은 대가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토큰으로 수령한 경우 그 토큰의 시가이며, 토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한 NFT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NFT의 취득가액)가 됨
  - 원칙적으로 양도손실은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NFT의 보유가 주로 취미, 오락, 휴양, 감상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
- 최초 구입자가 법인인 경우 디지털아트 NFT를 양도하여 적정한 대가를 얻은 경우 그 양도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함

〈표 Ⅲ-11〉 NFT 거래에 대한 소득세 취급

구분		1차 유통	2차 유통
소득세	거래 성격	열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열람에 대한 권리의 양도
	소득 구분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요약함

300)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토지, 차지권, 건물, 주식 등, 금지금, 보석, 서화, 뼈, 선박, 기계기구, 어업권, 거래 관행이 있는 차가권, 배우자 거주권, 배우자 부지 이용권, 골프 회원권, 특허권, 저작권, 광업권, 토석(모래) 등이 있으며 금전 채권은 제외함(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No.3105 譲渡所得の対象となる資産と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25. 2. 18.)

##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 비교

-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과세제도를 조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두드러짐
  - 한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를 다루고, 그 외 거래는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급하지만, 일본은 그러하지 않음
    - 일본은 가상자산의 채굴, 발행, 양도, 대여, 분열 등 거래 전반을 적용하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규정을 입법하고, 과세당국의 지침 공개를 통해 과세 취급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 일본은 ICO 발행,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토큰증권 발행 등을 이미 제도로 규제하고,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19년부터 시행되어 가상자산 거래상 과세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세 규정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적격 조각 투자상품은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이익처럼 과세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디지털자산 친화적으로 보임
    -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모두 7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한국의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한 익명조합출자지분(GK-TK)은 토큰화 여부와 관계없이 도관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 「금상법」상 금융상품선물거래에 해당하는 원자재 선물 거래나 외화 증거금 거래와 달리 「금상법」상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는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가법을 자산의 평가방법으로 하는 한국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를 자제하지만 일본은 그러하지 않음

- 일본은 법인세 목적상 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법을 정하고 있는 까닭에 활성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 암호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함

□ 다음 본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토큰증권,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제도를 비교함

## 가. 가상자산

### 1) 부가가치세

- 한국과 일본 모두 가상자산 매매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한국은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
  - 일본은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암호자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령하는 이용료는 자산의 대부분으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함
- 한국과 일본 모두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 간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거래의 중개나 출금 등의 용역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함
  - 일본은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암호자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중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으로 소비세를 과세함

〈표 IV-1〉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별 부가가치세 취급

거래 유형	한국 부가가치세	일본 소비세
가상자산 매매	비과세	비과세
가상자산 대여	- <sup>1)</sup>	과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개	과세	과세

주: 1) 한국은 가상자산 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생산하지 않음  
자료: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2) 개인 소득세

-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외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은 그러하지 않음
  -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의 범주에 채굴이나 렌딩, 에어드롭 등으로 취득하는 소득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에어드롭의 경우 과세실무상 경품 또는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나 현행 실무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본은 암호자산 매각, 교환, 대가 지급으로 인한 소득 외에도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을 통한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함
    - 하드포크 또는 분열로 새로이 발행한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고 에어드롭 역시 분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임
    -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장부 구비 여부 및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잡소득(기타 잡소득),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과세방법 및 적용세율)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일본은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함
  -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
    -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함
  -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하며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공적연금 외 잡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암호자산 소득에 대한 별도 면세점은 두지 않음

□ (손익통산)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손익은 동일 소득 내에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별도의 이월공제 규정은 없음

- 일본은 암호자산 소득을 잡소득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손익통산이나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할 수 없지만, 암호자산 거래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고 장부를 구비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함

〈표 IV-2〉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

구분	한국	일본				
		수입금액 300만엔 이하	수입금액 300만엔 초과			
			장부 불비	장부 구비		
가 상 자 산 소 득	양도	기타소득	잡소득 (기타 잡소득)	잡소득 (업무 관련 잡소득)	사업소득	
	대여	기타소득				
	채굴	-1)				
	스тей킹	-1)				
	렌딩	-2)				
	하드포크	-2)				-3)
	에어드롭	기타소득 <sup>2)</sup>				-3)
과세방식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적용세율	20%	5~45%				
면세점/기본공제	연 250만엔	-4)				

주: 1) 우리나라는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명시적인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우리나라는 렌딩,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음. 에어드롭의 경우 경품 등으로 실무상으로는 기타소득 과세하며, 이러한 실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일본은 하드포크 또는 분열로 취득하는 암호자산이 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고, 에어드롭에 대해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취득 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분열과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 외 잡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20만엔 면세점은 원고료, 강연료, 실버인재센터, 공유셰어링 이코노미 수입, 개인연금, 상조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 암호자산 소득에 대한 별도 면세점은 없음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필요경비 공제) 한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함
- 한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취득가액은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임
  - 일본은 암호자산 양도원가와 매각 시 발생한 수수료 외 암호자산 매각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함
    -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도원가 외 암호자산 소득 관련 업무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 양도원가의 계산은 암호자산별로 이루어지며 총평균법(법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매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한국과 일본은 취득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가상자산 소득의 추계 계산을 허용함
- 한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있음
    - 2027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음
  - 일본은 국외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통한 거래 또는 개인 간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 취득가액이나 매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기인하는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매각가액의 5%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할 수 있음<sup>301)</sup>
- (저가 및 무상 양도) 일본은 암호자산의 무상 및 저가 양도에 대해 수입금액 재계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한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01) 이와 같은 일본 암호자산 추계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소득 적용 자산인 유가증권의 그것과 동일함

- 한국은 특수관계인 간 가상자산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함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 한편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 일본은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대가로 암호자산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함
  - 시가의 70% 상당액 미만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는 금액에 대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표 IV-3〉 한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무상 또는 저가양도 과세취급(개인vs개인)

구분			한국		일본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저가 양도	특수 관계자	○	소득세 과세 (시가-대가액) <sup>1)</sup>	증여세 과세 (시가-대가액- min(시가의 30%, 3억원) <sup>2)</sup>	소득세 과세(시가 70% -대가액)	증여세 과세 (시가 70% -대가액)
		×	- <sup>3)</sup>			
무상 양도			-	증여세 과세 (시가)	소득세 과세 (시가)	증여세 과세 (시가)

주: 1)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함  
 2) 저가 양수에 대한 이익 증여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3) 한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3) 국제조세 과세취급

- 비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과세는 차이가 있음

-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한국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하지만, 일본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일본은 현행 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함)와 관련된 소득을 열거하는데 암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 가상자산 거래 소득) 한국은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명시적인 법 규정을 도입한 바 없음
  - 일본은 법률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및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행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는데, 비거주자의 그 외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는 과세당국의 해석이 공개된 바는 없음

#### 4) 법인세

- 한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 외에는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하지만, 일본은 법인의 암호자산 취득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
  - 일본은 법인의 암호자산 발행 및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암호자산 취득가액 및 후속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대적으로 구체화함
  - 일본은 시가법에 따른 자산 평가방법을 허용하는데, 암호자산을 발행한 법인의 시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법인세제에 도입함
  
- 자산의 장부가액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입선출법만을 허용하지만, 일본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 한국은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취급하여 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선입선출법(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

- 일본은 가상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동평균법(법정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자산의 후속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시가법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은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암호자산(시장 암호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후속 평가함
- 시장 암호자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제한이나 기타 조건이 부가된 특정 자기발행 암호자산이나, 특정 양도제한부 암호자산으로 자기발행 암호자산 등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 나. 토큰증권

- (토큰증권 현황) 한국 토큰증권의 경우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 등<sup>302)</sup>이 발행 및 유통되고 있음
- 일본은 주식, 사채, 수익증권(이상 토큰화 유가증권) 외에도 간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인의 사원권 등, 익명조합출자지분,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등의 집합 투자체제지분을 토큰화한 전자기록이전권리의 발행을 허용함

### 1) 부가가치세

- 한국과 일본 모두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토큰증권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한국은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처리를 명확히 밝힌 바 없지만, 재화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고려한다면 증권의 양도는 부가가

302) 제1항 유가증권을 토큰화한 경우를 토큰화 유가증권이라 하고, 제2항 간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비정형증권을 토큰화한 경우를 전자기록이전권리라고 함. 토큰화 유가증권과 전자기록이전권리를 총칭하는 것이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 등임

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임

- 일본은 전기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에 대해 소비세 취급을 달리 규정한 바 없지만 토큰화하지 않은 기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소비세를 비과세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보임<sup>303)</sup>
- 한국은 조각투자상품을 다루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는 없지만,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현행 법을 고려할 때 과세할 것으로 보임

## 2) 소득세

- 본문은 우리나라 조각투자상품(증권)과 유사한 일본의 집단투자체계지분(익명조합출자지분)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함
- 한국은 적격 조각투자상품(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본은 증권의 토큰화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도관과세함
- 한국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적격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 포함)은 적격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과 같이 과세함<sup>304)</sup>
  - 비적격 조각투자상품 또는 이전 지급분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별로 달리 과세함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신탁단계(법인세 과세)와 분배단계(투자자 배당소득 과세)에 각각 과세하고, 수익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투자계약증권은 익명조합 형태의 공동사업 과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임

303) 「금상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제1항 유가증권), 합자회사 등의 지분, 익명조합 출자자지분 등 유가증권 등 양도 거래에 대해 소비세 비과세함

304) 조각투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처리함. 조각투자상품의 이러한 과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있음

- 일본은 집단투자체계지분의 익명조합출자지분을 토큰화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의 단계에서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함
  -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7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함

〈표 IV-4〉 한국과 일본의 조각투자상품 과세 처리

구분		한국		일본	
세법상 토큰증권		비적격 조각투자상품		집합투자체계지분 (익명조합출자지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적격 조각투자 상품 <sup>1)</sup>
소 득	분배	배당소득	- <sup>4)</sup>	배당소득	잡소득
	양도	양도소득	- <sup>4)</sup>	배당소득	양도소득
세율		배당: 14% <sup>2)</sup> 양도: 20%, 25% <sup>3)</sup>		14% <sup>2)</sup>	5~45%의 7단계 누진과세

주: 1) 요건을 충족한 비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함

2)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 25%를 적용함

4)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대해 명시적 법규정은 없지만 공동사업의 과세 원칙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임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다. 스테이블코인

-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 및 과세제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음
- 일본은 전자결제수단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과세규정을 정함
  -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및 상환을 기본적으로 환거래로 취급함

- 법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만 발행할 수 있음
- 과세목적상 전자결제수단은 요구불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취급하고, 관련 양도손익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과 익금으로 산입함

## 라. NFT

### 1) 부가가치세

- 한국은 NFT 공급에 대해 명시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을 마련한 바 없음
  - 다만 프로축구 영상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각 선수들의 정보 및 경기 영상에 일련번호 및 등급을 부여하고, NFT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해 NFT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
- 일본은 디지털아트 NFT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의 측면에서 소비세 과세 지침을 공개한 바 있음
  -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NFT 발행자와 구입자 간 거래(1차 유통)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이용의 허락’과 관련한 거래로 인정하여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으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함
  -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구입자의 전매 거래(2차 유통)는 ‘이용의 허락과 관련한 권리(이용권)’의 양도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함

### 2) 소득세

- 한국은 NFT 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NFT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개인 NFT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이 사례에서 NFT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 및 플랫폼을 통해 NFT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NFT는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지만, NFT가 그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일본은 디지털아트 NFT 거래 성격을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로 취급하고 소비세와 소득세 과세처리 지침을 공개함
  - 1차 유통의 거래를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으로 취급하여 발행자의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2차 유통의 거래는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표 IV-5〉 한국과 일본의 NFT 과세 처리

구분	한국	일본
부가가치세	NFT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유통 거래: 전기통신 이용 역무의 제공으로 소비세 과세함</li> <li>• 2차 유통 거래: 저작물의 이용의 허락 관련 권리의 양도로 취급하여 소비세 과세함</li> </ul>
소득세	디지털 콘텐츠 NFT 발행자와 구매자 간 거래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유통 거래: 디지털아트의 열람에 관한 권리의 설정과 관련한 거래로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2차 유통 거래: 디지털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 2. 시사점

- 일본 제도의 조사를 토대로 앞서 선행 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개선 방안을 설명함
  - 한국 세제가 일본의 제도를 계수한 내력은 있으나, 그 이후 회계정책이나 소득세 제상 차이가 있어 직접적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은 지양함
    - 예를 들자면 일본 법인세법은 자산 취득 시 손익을 인식하며, 시가법에 의한 자산의 후속 평가를 의무화함

### 가. 규제 인프라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선 방안

- 2021년 법인세법 가상자산 관련 규정의 입법은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마련되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고려하여 법인세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305)</sup>
  - 가상자산 자산의 분류, 장부가액의 결정, 후속 평가방법, 평가차손 취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아래 본문에서 간략하게 제시함

#### 1) 가상자산 평가방법

- 2024년부터 시행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발행기업, 보유기업, 가상자산사업자별로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 및 평가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함
  - 법인별 가상자산의 자산 인식 및 계정 분류는 다음과 같음
    -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개발한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305) 주요 규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각각 2024년 7월 19일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됨

- 유보하는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과 금융상품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또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으로 정할 수 있음<sup>306)</sup>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게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사업자에게 통제권이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함
-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함<sup>307)</sup>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함
  - 무형자산은 활성시장<sup>308)</sup>이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으로 측정 가능함
  - 기타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함<sup>309)</sup>
  - 금융상품 정의에 충족하는 토큰 증권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후속 측정함<sup>310)</sup>
  -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도 또는 중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순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함<sup>311)</sup>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를 고려하여 자사거래소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함<sup>312)</sup>

306) 기타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에 한함

30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p. 10~18

308)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을 의미함

309) 무형자산의 순공정가치 또는 기타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에 관측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310) 토큰 증권이 채무상품인 경우 토큰 증권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시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

3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기타자산으로 분류 가능함

- 그러나 「법인세법」은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상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
  - 2021년 세법 개정으로<sup>313)</sup>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을 평가대상 자산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함<sup>314)</sup>
- 한국은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지만,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상당하여<sup>315)</sup>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선입선출법 규정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년 기준 5개의 주요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 후, 유통(유상 매각, 무상 배포 등)되지 않은 내부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총 발행물량(310억개) 대비 81.7% 수준으로 보고됨
  - 상장회사가 2022년 말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재무제표상 장부가액 1,392억원) 상당임
  - 국내 5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2022년 말 총 3,710억원이고 위탁보유한 가상자산은 18조 3,067억원임
-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의 분류에 따라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수차례 취득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물량 흐름이 선입선출 방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자산과 직접 대응되지 않아 취득시기가 불분명함

31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의 자기거래금지규정은 사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충돌된다고 볼 수 없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22, 37)

313)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314) 개정 배경은 2018년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수감법인인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고 자산으로 보고, 수감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선입선출법을 주장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안성희, 2024, p. 98); 또한 당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과세소득을 최대로 계산할 수 있음(정연대·김완용·천태영, 2024, pp. 96~97); 선입선출법은 가상자산 매매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특정 과거 자료만 조정하면 되어 경정이 용이함

315) 금융위원회(2023)b, pp. 8~9

- 실무적으로 총평균법은 평균단가 산정이 간단하고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여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sup>316)</sup>
- 가상자산은 유행의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른 진부화 위험이 적고,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측면에서 유가증권과 유사하므로 그 평가방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sup>317)</sup>
-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sup>318)</sup>

## 2) 가상자산의 시가

- 현행 소득세제는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 거래 행위 유형의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판단함<sup>319)</sup>
- 「소득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함<sup>320)</sup>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충액을 적용함

316)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적용함

317) 정연대·김완용·천태영(2024), p. 97

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5. 2. 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319) 특수관계자 간 이루어진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할 때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함. 이때 고가양수(매입), 저가양도, 저리대여, 고리차용 등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320) 시가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각기 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시가를 정의함

-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활성시장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sup>321)</sup>
  - 활성시장은 거래소 상장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양적·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가상자산 거래가 거래소에서 24시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은 가상자산 공정가치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야 함
    - 예컨대 기업의 영업시간 종료시점, 특정 협정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마감시간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전 거래 등으로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시장의 공시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sup>322)</sup>
  
- 특수관계자 간 가상자산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계산 시 시가 적용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도 매매가격 등이 주로 자기의 계산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시가를 창출하거나 이익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시가 평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3) 근거 법령의 일관성

- 「법인세법」은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빌려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마련함
  -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인세 규정은 다음과 같음

32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2023), pp. 25~37

322) 특수관계자는 시장참여자가 아니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충분한 규모와 빈도로 이루어질 수 없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2023, p. 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가상자산을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함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금액 계산을 규정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빌림
  - 현행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빌려 가상자산소득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함
- 근거 법령은 그 취지, 개념, 성격 등에 대해 서로 규율을 달리 정하므로, 세제 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고 체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규정의 근거 법령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할 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차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 효과를 가짐
  -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차이가 있음
  - 「법인세법」 제120조의4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정하는데 앞서 언급한 법인세 규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같은 법 내에서도 근거 법령을 달리함

#### 4) 비영리 내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 현행 법인세제는 내국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하지만,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제한하여 과세함
- 비영리법인은 출연금, 기부금, 현금, 회비 등을 비영리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하지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음
  - 법인세를 과세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에서 열거한 소득원천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한정하며,<sup>323)</sup> 열거하지 않은 소득원천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자금조달에 충당하거나 고유목적사업과 별개 목적사업의 영위 여부와 무관함<sup>324)</sup>

-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및 현금화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기부·후원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거래를 허용한다고 공개함<sup>325)</sup>
    -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 및 처분에 대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현금화를 차후 허용할 예정임
-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이 현행 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포섭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은 그러하지 않음<sup>326)</sup>

323)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음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24) 소득세과 22601-884, 1985. 8. 24.

325) 금융위원회·관계기관 합동(2025), pp. 1~5

326)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조항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함. (i)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포섭된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음
  - 가상자산은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유동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자산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과세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을 수익사업으로 열거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세명확성과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 가상자산 국제거래

### 1)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 한국은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sup>327)</sup>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도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과세권을 행사함
- 비거주자의 소득은 국내에 일정한 끌개가 있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은 과세 범위를 상당히 넓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ii)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27)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국내에 있는 소득으로 자산의 소재지, 사업 활동의 수행지, 권리의 사용장소, 용역의 수행지 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함
  - 가상자산소득 원천이나 과세 기준에 대한 OECD 등 국제적 논의는 이루어진바 없고 국제기준 역시 마련되지 않음
  - 유가증권의 사례<sup>328)</sup>를 들어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은 살펴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나, 국내 법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거래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연관된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발행법인이 없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국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통해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는 그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비거주자의 소득은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 구분에 따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비거주자의 거주국가로 넘어갈 수 있음
- 한국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고, 소득별 과세권 배분에 따라 과세권이 변경될 수 있음<sup>329)</sup>
  -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및 제21조

328) 국내원천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은 (i) 내국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ii)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출자증권 (iii)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329) 2018년 말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8년 말 해당 조항을 삭제 시 기획재정부는 ‘조세조약의 법규성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 우선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므로 설령 등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상 구분이 다른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에 따라 국내 세법상 과세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8, p. 80)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부분 거주지에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대부분이 그러함<sup>330)</sup>

-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와 체결한 조세조약과 같이 기타소득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은 한국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과세권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sup>331)</sup>
  - 미국의 조세조약을 예시로 들자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매매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미국이 과세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sup>332)</sup>

□ 일본은 2019년부터 암호자산 거래소득을 과세한 후 매년 일정한 수준의 신고 및 세수 실적을 보고할 정도로 제도가 안착하였으나,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 없음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과세당국 및 학계의 논의는 관찰되지만, 실제 입법화하지 않음
- 더 나아가 국세청은 세무처리 지침을 통해 비거주자가 국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을 공개함<sup>333)</sup>

□ 일본의 접근방식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실무상 계좌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가능성이 작고 현행 조세조약의 적용을 고려할 때 과세 유지가 쉽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330) 한국 조세조약은 양도소득의 경우 룩셈부르크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고(이상엽 외, 2017, p. 182),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과세이나,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원천국가도 과세 가능함(이상엽 외, 2017, p. 254)

331) 이상엽 외(2017), p. 254

332) 이것은 미국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자본손익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은 ‘부동산 또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 관련된 자산이거나 원천지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외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교환, 기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임

333) 파생상품투자 중 하나인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그것은 명시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법화함

-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향후 국가 간 과세권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로 보임
-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이 중요하지 않고, 국내·외 거래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세제가 국제적 동향과 다르면 불필요한 국제조세 분쟁뿐 아니라 나아가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므로 한국도 국제거래의 측면에서 과세권 유지 가능성의 유무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범위를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과세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대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같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는 조항을 별도 마련하는 개선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이 없어 일차적으로 한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향후 소득 구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이경근(2020)은 현행 소득세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2) 거주자의 국외 가상자산소득

- 거주자가 국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 및 대여 소득은 한국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과세될 수 있음
  - 해당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국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 한국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음
- 현행 세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비용의 차감 방법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sup>334)</sup>
- 그러므로 가상자산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의 선택을 허용하거나 또는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다. 기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 한국은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와 같은 과세 취급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관찰됨
- 일본,<sup>335)</sup> 독일, 프랑스<sup>336)</sup> 모두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또는 잡소득)으로 일차적으로 분류하여 과세 취급하고 다른 소득과 가상자산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전통적 양도소득 대상 자산으로 취급하기에는 낯설기 때문으로 보임<sup>337)</sup>
  -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금융투자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sup>338)</sup>를 도입했는데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음

334)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8호, 제57조

335) 일본의 경우 투자·투기 목적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우에 암호자산은 양도소득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거나(土屋雅一, 2014; 伊藤公哉, 2014), 자산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관념이고 암호자산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자산(金子, 2021, p. 265)이라는 학계의 견해도 있지만,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암호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지만, 「자금결제법」상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한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고(「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소비세법」상도 지불수단과 유사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양도소득 적용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泉絢也, 2019; 이경근, 2020)

336) 프랑스는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규정 안에서 자본이득 과세함(홍병진·박수진·김민경, 2024, p. 99)

337) 전통적 양도소득 대상 자산인 부동산, 주식, 채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을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 대부분 공신력 있는 등기 및 등록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나 이동이 공개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측면 등을 들 수 있음

338)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을 구분하고, 누진과세하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말함(홍범교·이상엽, 2013, p. 58)

- 이러한 취급은 전통적 양도소득 대상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의 특징이나 성질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손익이 전통적 소득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의 기능과 양태가 변화하므로,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각 국가의 조세정책일 수도 있음
  
- 다만 한국은 가상자산 대여·양도로 인한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은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하여 납세자의 과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한국의 과세 취급은 가상자산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세법 전반에 걸쳐 있는 기본 원칙과 일맥상통함
  - 다만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의 인식과 실제 과세 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납세 불확실성이 존재함
  
- 가상자산 세제를 시행하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조세효율성과 과세확실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은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거래가 등장할 때마다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하기보다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또는 잡소득)으로 우선 포섭한다는 측면에서 과세 취급이 상대적으로 명확함<sup>339)</sup>
  - 더 나아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 유무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조세 다툼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를 완비하고, 그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 및 거래 양태 및 규모에 맞는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39) 프랑스는 거래 유형별로 기타소득 내에서 다시 자본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취급함(홍병진·박수진·김민경, 2024, p. 99)

- 일본은 일정 수준의 가상자산 수입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세부담 완화와 세원 양성화의 일환으로 한국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매매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일정 규모의 수입 금액(300만엔 초과)을 갖는 납세자가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보관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 이 경우 필요경비의 추가 공제,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결손금의 차기 이월 공제 등을 적용함

## V. 결론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암호자산 과세제도와 기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에 참조할 만한 사항을 검토함
  -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암호자산 소득을 과세하였는데 현재까지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함
  - 한국 소득세제는 일본의 그것을 계수한 내력이 있으므로 일본 디지털자산의 취급을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의 디지털자산 규제 및 과세처리 규정을 조사함
  - 일본의 경우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받고, 증권토큰은 「금융법」의 규제를 받는 이원적 규제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관찰되며, 암호자산 및 증권토큰의 발행을 허용함
  -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암호자산,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법정화폐표시 스테이블코인, NFT 등으로 구분하고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과세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세수 기여도를 유지함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가상자산 평가 방법, 가상자산 시가, 근거 법령,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의 측면에서 법인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2024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을 고려하여 현재 선입선출법의 평가방법을 자산의 분류에 따라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수관계자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를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시가 창출 및 조정 행위를 고려하여 시가를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가상자산 규정의 근거 법령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변경하여 세계 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고 체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비영리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과 관련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제거래의 측면에서 과세권 유지 가능성 유무를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세부담 완화와 세원 양성화의 하나로 일정 규모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소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18.
- \_\_\_\_\_,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19.
- \_\_\_\_\_,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 \_\_\_\_\_,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별첨)」, 2023a.
- \_\_\_\_\_,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2023b.
- \_\_\_\_\_,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a.
- \_\_\_\_\_,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b.
- \_\_\_\_\_,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2024c.
- \_\_\_\_\_,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a.
- \_\_\_\_\_,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2025b.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3.
- 금융위원회·관계기관 합동,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02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별첨1)」, 2023.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4.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8.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4a.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b.

- 길용원, 「일본에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조세와 법』,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23, pp. 53~93.
- 김문정·이형민·김수린,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연구-배당과세제도와 자본 이득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안성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 『회계저널』, 33(3), 87-107, 한국회계학회, 2024, pp. 87~107.
- 오성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법제에 관한 고찰-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法과 政策』, 第13章 第1號,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pp. 207~237.
- \_\_\_\_\_,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조합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제-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5, pp. 207~240.
- 이경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제9권 제4호), 2020. pp. 505~556.
- \_\_\_\_\_,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조세통람, 2024.
- 이병관,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33권 12호, 한국금융연구원, 2024. pp. 20~22.
- 이상엽·박수진·유현영·이형민·조승수,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석준, 「가상자산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2022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96호, 한국법학원, 2023, pp. 261~262.
- 이효경, 「일본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방식과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6권 제4호(통권 제91호), 2022. pp. 225~256.
- \_\_\_\_\_,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金融法研究』, 제21권 제1호, 2024, pp. 83~124.
- 정연대·김완용·천태영,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2024, pp. 71~107.

조용규·최영노·남궁주현,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pp. 159~200.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홍병진·박수진·김민경,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EU의 법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외국 문헌〉

坂和夫/松本実/福田正樹, “多種多様な暗号資産に応じた所得区分該当性の探究と支払手段の視点からの雑所得または譲渡所得にすべきかの理論分析-”, 『会計プロGRESS』 23号, 日本会計研究学会, 2022, 24.

泉絢也, 「仮想通貨の譲渡(売却又は使用)と所得税法上の所得区分 - 外国通貨や為替差損益に対する課税問題も視野に入れて -」, 『税務事例』, 50卷 10号, 2018.

\_\_\_\_\_, 「仮想通貨(暗号通貨, 暗号資産)の譲渡による所得の譲渡所得該当性 - アメリカ連邦所得税におけるキャピタルゲイン及び為替差損益の取扱いを手掛かりとして -」, 『税法学』, 581号, 2019.

\_\_\_\_\_, 「なぜ暗号資産(仮想通貨, 暗号通貨)の譲渡による所得は譲渡所得に該当しないのか? - 国会における議論を手掛かりとして」, 『千葉商大論叢』, 第57卷 第1号, 2019年 7月, 109~133頁.

一般社団法人日本STO協会(JSTOA),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市場ワーキング・グループ中間整理(報告書)」, 2022, <https://jstoa.or.jp/files/news/f2ba0549962da619e75cb06e1afbf52bc1378058cc5e581603ce5243614581e>, 검색일자: 2025. 2. 7.

\_\_\_\_\_, 「ST発行関係統計 2024년 9월 2일」, 2024, <http://jstoa.or.jp/files/news/e187717ba96992806842005de5b904527a128ee7163a413ecf078440565f0c7c>, 검색일자: 2025. 2. 7.

\_\_\_\_\_, 「2025 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要望書」, 2024b, <https://jstoa.or.jp/files/news/89950b6536bcd28447f1b7b1d086262d9730928af3>

- e0f34684e72bb2ff67ffc1, 검색일자: 2025. 2. 18.
- 谷合正成, 「暗号資産取引に係る所得税制の現状と動向」, 『経済のプリズム』 241号,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024, pp. 1~9.,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r06pdf/202424101.pdf](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r06pdf/202424101.pdf), 검색일자: 2025. 2. 7.
- 久保田安彦, 「米国におけるデジタル資産・暗号資産と証券規制—わが国の不公正取引規制のあり方を検討するための予備的作業として—」, 日本証券業協会, 2022, pp. 55~77., <https://www.jsda.or.jp/about/kaigi/chousa/JCMF/kubotaronbun4.pdf>, 검색일자: 2025. 2. 3.
- 伊藤公哉, 「仮想通貨と所得税—採掘されたビットコインに所得税はかかるのか?—」, 『大阪経大論集』, 65(4), pp. 151~167.
- 金子宏, 『租税法[第23版]』, 弘文堂, 2019.
- 金子宏, 『租税法 第24版』, 弘文堂, 2021.
- 国税庁,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 令和 5年 1月 13日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3,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shotoku/shinkoku/0022012-080.pdf>, 검색일자: 2025. 2. 11.
- \_\_\_\_\_, 「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 令和 6年 12月 20日 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4,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검색일자: 2025. 2. 11.
- 増田雅史,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について」, 『金融・商事判例』, 2021年 3月 増刊(1611号), 2021.
- 山沖義和, 「資金決済法・金融商品取引法の改正経緯から紐解くデジタル決済手段(暗号資産類似)等の定義と注目点」, 『SBI金融経済研究所 所報』, Vol. 4, SBI金融経済研究所, 2022.
- 細川健, 『暗号資産とNFTの税務』, 白桃書房, 2024.
- 矢野貴之,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実体法上の位置付けおよび関連する法規制」, 『PwC's View』, 第43号 特集「持続可能なサイバーハイジーン」, PWC, 2024, pp. 30~35.
- 土屋雅一, 「ビットコインと税務」, 『税大ジャーナル』, 23, 2014. pp. 69~90.
- 林賢, 「暗号資産(仮想通貨)に係る取引から生ずる所得の国内源泉所得への該当性について

の考察」, 『税務大学校論叢』, 第101号, 2020. pp. 175~240.  
 景山智全, 「集团投資スキームにおける課税上の問題点」, 『税大論叢』, 40号, 税務大学校, 2004,  
 pp. 219~315.

###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1298>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2025. 2. 17. 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검색일자: 2025. 2. 21.  
 『대한경제』, 「법인, 코인 거래 확산하나」, 2022. 4. 1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4101324516400653](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4101324516400653), 검색일자: 2025. 2. 17.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044>, 검색일자: 2025. 2. 23.  
 뮤직카우, <https://www.musicow.com/>, 검색일자: 2025. 3. 19.  
 아트앤가이드, <https://artnguide.co.kr/>, 검색일자: 2025. 3. 19.  
 업비트, <https://support.upbit.com/>, 검색일자: 2025. 2. 17.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검색일자: 2025. 1. 24.  
 카사, <https://www.kasa.co.kr/>, 검색일자: 2025. 3. 19.  
 한국회계기준원,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016003.do?siteCd=0020000000000000&seq=36527&ctgCd=016003>, 검색일자: 2025. 1. 17.  
 国税庁, <https://www.nta.go.jp/>  
 金融庁, <https://www.fsa.go.jp>

세법연구 24-05

일본 디지털자산의 과세제도 조사 및 시사점

발행 2024년 12월

저자 홍병진 · 박수진 · 김혜림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39-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